

제329회 국회
(정기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제 13 호

국회 사무처

2014년12월2일(화) 오후 5시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2015년도 예산안
16.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18.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19.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2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2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4.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25.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
26.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
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의된 안건

- | | |
|------------------------------------|---|
|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
|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
|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
|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
|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 |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2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 · 도종환 · 김태원 · 박창식 · 김광진 · 민병주 · 신경민 · 서영교 · 박인숙 · 정진후 · 정갑윤 · 하태경 · 김춘진 · 이진복 · 김무성 · 박민식 · 김제남 · 박기춘 · 이운룡 · 이낙연 · 윤관석 · 이석현 · 한명숙 · 이만우 · 손인춘 · 김장실 · 강은희 · 문대성 · 유기홍 · 유은혜 · 이에리사 의원 발의)	24
15. 2015년도 예산안	25
16.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5
17.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5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33
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 · 김재원 · 강기윤 · 이이재 · 김도읍 · 김현숙 · 윤영석 · 염동열 · 박인숙 · 김정록 · 이완구 · 주호영 · 이장우 · 안규백 · 유기홍 · 유성엽 · 진성준 · 박완주 · 박홍근 · 우윤근 · 윤관석 · 조정식 · 김관영 · 박범계 · 김광진 · 문희상 · 문병호 의원 발의)	33
18.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34
19.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34
20.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34
2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34
2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34
2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37
24.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37
25. 일본 내 협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심재권 · 유기홍 · 이미경 · 박혜자 · 부좌현 · 박남춘 · 민병두 · 최민희 · 이상직 · 강동원 · 문희상 · 이찬열 · 김경협 · 배재정 · 김춘진 · 임내현 · 이석현 의원 발의)	37
26.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
○ 위문금 각출의 건(의장 제의)	39
○ 휴회의 건(의장 제의)	39
○ 5분자유발언	39

(18시47분 개의)

○의장 정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및 국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14건이 각각 본회의에 자동부의되었습니다.

11월 10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장에 정병국 의원, 간사에 황영철 의원, 정성호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11월 17일 국민안전혁신 특별위원회장에 전병헌 의원, 간사에 김태원 의원, 노웅래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1일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인사청문요청안 및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정재찬) 인사청문요청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로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윤근 의원 등 32인으로부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4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보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정의화 의사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심의할 안전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8일 2015년도 예산안 등 안전 처리와 관련하여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의사국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의3에 의거하여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4건이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안전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없으므로 의원이 발의한 원안의 경우 발의 의원이,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의 경우 소관 부처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8시51분)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세법 개정안 총 9건의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 현행 1000만 원을 폐지하는 등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여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 배당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환류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연간 18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그 간의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 등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국내 소비자가 구글, 애플 등 해외 오픈마켓에서 해외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매하는 경우 국내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흡연을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해외금융 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신고자에 대한 벌금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하여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지방투자 및 서비스업에 대하여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을 1%p 우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관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 경정청구기간을 내국세와 동일하게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자진신고율 유도하기 위하여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관세를 30%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들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동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최경환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琳 議員 경북 안동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의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회에 과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납세자 개인정보를 추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고, 둘째 탈세제도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인상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1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도 강석훈 의원 외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정문헌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문헌 의원입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20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14년부터 16년까지 소득세를 3년간 비과세한 후 17년부터 저율로 분리과세하고, 둘째 퇴직소득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세부

담 증가 폭을 개정안의 2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16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하며, 셋째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의 분할 지급 시 발생하는 이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소득공제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를 법에서 명확히 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수정안에 대해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정문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에 47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8인 중 찬성 206인, 반대 32인, 기권 10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나성린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린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외 과세정보 파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인이 해외 부동산 투자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둘째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제출 의무를 면

제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수정안에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나성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호중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중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구리시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위원인 윤호중입니다.

저는 오늘 부자 감세 철회 없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매년 1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과 약 40조 원의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자와 재벌에 대한 감세 철회를 담기는커녕 배당소득 증대세제라는 ‘부자 감세 2탄’을 선보였고,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담배 개소세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독자적인 세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으로 연평균 9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 확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정부와 새누리당의 법인세의 ‘법’자도 건드릴서는 안 된다는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대기업 비과세 감면 중 고용창출 세액공제와 R&D 공제를 일부 없애는 정도를 관철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서 31개 법안이 11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사실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기획재정위원회의 권한은 정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중 14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다른 법안들의 개정사항은 결국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통해서만이 지금 이렇게 수정안으로 제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올해가 국회선진화법을 처음 시행하는 해라고 하더라도 정부 여당이 국회선진화법에 대

해서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고 또 그 법의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도 않고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수정안을 내놓고 이 법을 우리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 아니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는 입장 고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조세소위가 무력화되었고 국회의원의,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의권이 극도로 제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법을, 소위에서도 논의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법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몇 마디의 제안설명만을 듣고 처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중요한 세법을, 국민에 부담을 드려야 되는 이 세법을 이렇게 국회가 한 번 제대로 상의도 못 해 보고, 합의를 추진해 보지도 못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법안들은 우리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우리 서민들의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입니다. 특히 담뱃세가 그렇습니다.

법인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감세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우리 당의 요청은 무시되었고 오히려 부자 감세가 추가로 추진된 법안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법안들을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들이 그대로 통과시킬 경우에 이것은 12월 2일 법안의 처리 시한을 맞추는 헌법을 준수한다는 그 명분은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국회가 세법에 대한 심의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이 법의 수정안과 본안에 모두 반대 표결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권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윤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입니다.

간단하게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은 좋은 법안을 조세소위에 올려 주셨습니다. 제가 그 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그중 상당수를 채택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정부가 반대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님들이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법안은 끝까지 토론하자고 잡고 있었습시다라는 야당 의원님들 법안도 챙기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여당 의원님들 법안은 더 이상 챙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내부에서 좀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뭐 하러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이번 조세소위를 통해서 했습니다.

조세소위 회의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법안이 통과된 다음에 여당 의원님들 기획재정위에 낸 법안 몇 개나 통과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제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안 어려운 기업이 있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법인세는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98조 8000억 원 재정적자 났습니다. 박근혜정부 지금 정부 예측으로 135조 원의 재정적자가 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그것은 과소평가된 금액입니다. 최소한 150조 이상 재정적자가 날 겁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49만 개가 넘습니다. 2013년도 단 3개의 기업이 그 49만 개의 기업이 올린 모든 당기순이익의 37.3%를 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3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들의 세금은 건드리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 지금 문을 더 이상 열고 있어야 되나 고생하는 우리 중소기업들, 여기에서 세금을 내고 싶을까요? 세금에 성역이 있는 것은 왕조시대 이후에 금기입니다. 나라를 흔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번 조세소위 심의과정에서 정부 여당은 명백하게 성역을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 통과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홍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호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법인세법 개정안의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의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법인세 감세로 인해 세수가 줄어든 것이 결정적입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서 매년 9조 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세혜택 중 3분의 2가 대기업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3분의 1만 중소기업에게 돌아가고 있는데 투자와 고용은 제자리걸음 수준이고 대신 대기업의 내부유보금과 부동산보유액만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명백히 재벌특혜성 감세이고 분명한 정책 실패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빨리 잘못된 재벌특혜성 감세정책을 바로잡고 재정적자를 보완해야 하지만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그런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담뱃세다, 주민세다 하면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민들에게는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걷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득이 많고 가장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 반대로 세금 깎아 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기 때문에 세금을 올릴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 이상 높아진 반면 가계소득은 그만큼 줄어든 현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법인세 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 법인세법에 포함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대부분 적용요건이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

어서 불명확하고 세수효과도 얼마 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기왕에 페널티로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이자나 배당 등 사내유보금의 운용수익 전반에 대해서도 추가과세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를 또다시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까지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고 기업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불공정한 기업거래 관행을 바꾸고 중소기업의 생산적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능력에 따른 세금부담은 세금부과의 기본원칙이자 국민적 상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부담 능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집단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 두고 있는 재벌 대기업입니다.

아무쪼록 현행 비정상적인 법인세 체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수정안과 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7인, 기권 25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류성걸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의원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정부안에서 기업상속공제 요건과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을 보완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경영기간 8.6년을 감안해서 일정수준의 업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을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세 신고 시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간 평가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데 양 자산 간 평가 차이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3억 원에서 현행과 같이 2억 원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장기간 건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인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에 '경제적·사회적 기여'를 추가하여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류성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관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서 반대토론을 하고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속세법 18조에 규정된 기업상속 공제 제도는 오랫동안 기업을 영유해 온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에 자녀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의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100년 이상 장수하는 명문기업이 나오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먼저 이 제도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도에 이 제도는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공제한도 1억 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불과 7년 만에 수차례 변경을 거쳐서 작년 말에는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 원으로 허용되었습니다. 불과 7년 만에 공제한도가 500배 늘어난 것입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르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를 연매출 3000억 원에서 다시 5000억 원으로 늘리고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롭게 276개의 기업이 이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276개의 기업들은 기업당 최대 250억 원, 모두 합하면 장래 약 6조 원 상당의 상속세를 최대 안 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전체 51만여 법인 중에 불과 714개만이 이 제도의 제외대상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있는 명문가족기업을 육성해서 지속적으로 고용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정부의 취지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이렇게 기업을 하는 부자들에게 그날 수백억 원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제도가 개정된 지가 불과 1년이 됐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상속공제받은 사람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2012년에 58명 344억 원의 공제를 받았는데 2013년에는 70명 933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 뻔합니다. 특히 이 제도가 기업의 오너가 사망하였을 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수혜자들이 이미 급격하게 늘어나 있는 것입니다.

대상 확대와 공제한도의 급격한 확대 이외에도 정부안의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정부는 피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해서 현행 10년간 기업을 유지해야 되는 조건을 당초 원안은 5년, 이번 수정안은 7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지분 보유 요건도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급격하게 완화하고 있습니다. 7년 영유한 기업을 과연 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속 이후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 후에는 업종 변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 가능합니다.

상속 후에 10년간의 고용유지의무가 있는데 이것도 7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지 1년도 안 된 현행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가업 승계를 아주 쉽게 그리고 대폭적으로 허용해서 상속세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조세소위에서 야당들이 반대하니 이제 예산부수법안이 자동상정된 것을 기회로 해서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선에서 정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많은 직원들도 정부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부결시켜 주십시오.

부결되더라도 이미 1년 전에 개정된 상속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결된 이후에는 조세소위에서 다시 토론을 거쳐서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세제를 내놓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관영 의원께서 이미 훌륭한 토론을 해 주셨지만,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한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하면서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은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라는 미명하에 사실상 세금 한 톨 없이 부의 무상 이전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조세 형평성에 반하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큰 안입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기업을 매출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불과 1년 만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출 5000억 원 규모의 기업이라면 비록 재벌 기업은 아니지만 상당수 업종에서 대한민국 수위를 다투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업 상속공제 대상이 되면서 전체 50만 개의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1700개를 포함한 2000여 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사주 일가가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피상속인이 상속 대상 기업을 경영한 기간에 대한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낮추고 있습니다. 비록 강석훈 의원 외 47인의 수정안에서 이를 7년으로 보완했다지만 문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7년밖에 경영하지 않은 기업을 가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가업이지 사실상 취득한 지 7년이 넘은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에 다를 아닙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속인이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 기업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기업의 기술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 상속 받은 이후에 가업용 자산을 자유롭게 매각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의무도 상당 부분 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말만 가업 상속이지 가업을 승계할 준비도 능력도 없는 상속인에게 세금 한 톨 없이 부의 무상 이전을 허용하는 상속세 무력화 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명문장수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규모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확대해 주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가업 상속공제액은 1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불과 7년 만에 100배 규모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명문장수기업확인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산업통상위원회에 계류되

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 도입을 전제로 감세 법안부터 도입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입법입니다. 우리 국회가 대주주 일가의 상속세를 깎아 주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미 3대, 4대째 가업 상속을 하고 있는 그런 재벌들이 나중에 '왜 우리가 재벌이라는 이유로 배제돼야 되느냐. 매출 5000억 기업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왜 배제돼야 되느냐' 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 이후 가업상속공제는 거의 매년 확대돼 왔고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제도 변경의 필요성이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대상 기업과 공제액은 매년 확대되었고 공제 여건은 거듭 완화됐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깜깜이식 감세를 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의 세금제도가 부유층에게만 한없이 관대하다고 느끼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주의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눈감아 주는 제도는 그만 뒤야 합니다.

아무쪼록 조세정의가 구현되고 세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완화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부자 감세인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행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시 꼼꼼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아,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박수는 치지 마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2인 중 찬성 114인, 반대 108인, 기권 40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국회법 제96조2항에 따라서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마쳤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박수 치지 마세요. 박수 칠 일 아닙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제석 255인 중 찬성 94인, 반대 123인, 기권 38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8인 중 찬성 257인, 반대 1인, 기권 10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만우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의원 기획재정부 소속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저가 담배로의 대체소비를 방지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인순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남인순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담뱃값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건강 증진 효과는 적고 소득역진성을 야기할 우려가 높아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인 남자 흡연율이 37.6%로 높고 담뱃값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기 때문에 금연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담뱃값 인상 계획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서민 증세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닙니까?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고 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면 서민 증세가 아니라 부자 감세부터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정부는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 연간 1조 7759억 원 등 2015년부터 5년간 총 8조 7315억 원의 세수증대를 예측하였는데 이는 실제보다 세수 증가폭을 낮게 추정해 증세 논란에서 벗어나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담배 가격탄력도를 0.425로 가정하여 담배소비량이 34% 줄어든 것이라고 전제한 것인데, 국회예산정책처는 4500원의 가격대에서 담배소비는 약 2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담배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비정상적인 입법입니다.

첫째, 그간 담배 관련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인데 슬그머니 개별소비세를 새로 신설하려는 것은 국세를 늘리려는 꼼수입니다.

담뱃값 2000원 인상의 세부내역을 보면 건강증진부담금은 488원, 개별소비세는 594원 등으로 개별소비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매우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둘째, 개별소비세의 전신은 특별소비세입니다. 담배를 사치품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며 국민건강보다는 세수확충을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반대합니다.

주형환 기재부 1차관은 기재위원회에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 치유 차원에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담배의 중독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미국에서 80여 건의 담배소송에 전문가로 참여하여 증언한 스탠퍼드대 로버트 프록터 교수에 따르면 술의 중독률은 5%에 불과하지만 담배는 흡연자의 90%가 중독 상태라고 합니다.

셋째, 정부의 담뱃값 인상계획은 국민건강보다는 서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지난 2010년 말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여러 연구를 보면 소비자들이 금방 적응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효과가 없으며 1000원, 2000원 인상은 물가 인상만 부추기는 수준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의 담뱃값 관련 공청회에서 유종일 KDI 교수는 담뱃값의 2000원 인상, 즉 80% 인상 시 체감 물가상승률이 5% 정도나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넷째,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가장 역진성이 큰 세금이 담뱃세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나 주민세 인상이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속셈이라면 국민적인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재정 파탄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로 한 것도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흠치는 격 아닙니까?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0 대 20으로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 신설보다는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며 소방안전과 관련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세수를 다른 세원에서 확충해야 마땅합니다. 담배 관련 제세에도 없었던 개별소비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설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남인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이만우 의원님 찬성토론 하시겠습니까?

이만우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십시오.

○이만우 의원 기획재정부 소속 이만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개별소비세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실질 담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담뱃값이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인 반면 성인 남성 흡연율은 42.1%로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점, 담배가격에 대해 민감한 청소년들의 흡연을 억제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담뱃값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담뱃값 인상안에는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불경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담배에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 판단됩니다.

개별소비세를 사치세가 아닌 담배에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사치세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3%에 불과하고 나머지 97%는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 치유·완화 목적으로 과세되고 있

다는 점에서 외부불경제 치유 목적으로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담뱃값 인상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도 담배에 대해 국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담배에 대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고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수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이전까지 감안하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수의 52%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결국 담배에 대해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방재정의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하여 여야는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여야가 오랜 협의를 거쳐 합의한 개별소비세 수정안에 찬성하셔서 흡연을 하락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만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서기호 의원입니다.

이른바 담뱃값 인상을 위해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행 담뱃세는 전체 6조 7000여억 원의 세수 중에 담배소비세 2조 8000여억 원, 지방교육세 1조 4000여억 원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지방세로서 지방재정에 매우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담뱃세로는 1조 5000여억 원 규모의 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배가 지방재정과 건강증진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담뱃값 인상 방안으로 엉뚱하게도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세수가 무려 1조 7000억 원 규모인데 이는 담뱃세 인상을 통해 기대되는 담뱃세 증가액 2조 8000여억 원의 60%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에 비해서 건강증진부담금의 증가액은 개별소비세 증가액의 절반 수준인 8000여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국민건강 증진과 지방재정 중심의 담뱃세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첫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일종의 목적 재원인 건강부담금보다 일반 재원인 개별소비세가 훨씬 큰 규모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담뱃세 인상이 명분만 국민건강 증진일 뿐이고 실상은 중앙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서민 호주머니를 노리는 우회적 증세로서 꼼수 증세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담뱃세 인상 방안은 철저히 중앙정부만을 위한 파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담뱃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의 증가액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면서 이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는 형국입니다. 그야말로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개별소비세의 상당 부분이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지방에 교부되고 이와는 별도로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감안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세수 증가액은 1조 7000여억 원, 이에 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세수 증가는 8000억 원과 2000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적자재정 보전용이라는 이번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한 부작용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지방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은 꼼수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도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다 보니 안 그래도 복잡한 담뱃세 체

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덩달아 지방교부세도 점점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부의 개별소비세 신설 방안은 중앙정부의 세수 보전을 위해 건강증진이라는 명분도, 지방재정난이라는 현실도 외면하는 잘못된 방안입니다.

아무쪼록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담뱃세 인상방안을 새롭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개별소비세 수정안 및 개정안을 모두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연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김재연입니다.

저 또한 담뱃세 인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원안과 수정안 그리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통계로도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담뱃세 인상은 담뱃값 지출이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세제 부담을 늘리는, 조세 부담을 늘리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인상되지만 지방교육세의 세율은 인하됨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200억 원 가까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이 악화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한 국세 증가분에 따라서 지방교부 금액도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보탬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의 자주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배는 소비의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품이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 소비의 감소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담배가격 인상으로 사재기나 저가담배 밀수, 물가 상승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의 일부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한다는 수정안도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민 증세라는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예산은 담뱃세 인상과는 무관하게 확보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결과적으로 담뱃세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서 채우려는 전형적인 서민 증세이기 때문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고단한 일상 중에 꺼내 드는 담배 한 개비의 휴식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한숨 섞인, 울분 섞인 원망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 부족은 재벌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채우면 됩니다. 올해 예상되는 9조 원가량의 세수 부족분은 법인세 인상만으로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의 법인세율이 각각 37%, 39%인 것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 인상은 과도한 증세가 아닙니다.

언제까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메우고만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세수 확보방안이 필요합니다.

조세형평성을 통한 소득불균형 해소와 서민을 위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 가장 많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법인세 인상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금 인상이 꼭 필요한 곳, 충분한 납세력이 있는 곳의 세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얇고 가벼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는 안 됩니다.

소득역진성을 강화하고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담뱃세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의 원안과 수정안 그리고 이후에 처리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모두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의화 김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교섭단체대표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30분간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회의중지)

(20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강석훈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앞으로는 야당하고 합의 안 할……」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뭐 하러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합의를 뭐 하러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자자자, 조용히 하세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십시오.

「빨리 마감해요」 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야당하고는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다. 도대체 이게 뭐꼬?」 하는 의원 있음)

「본인들이 잘하세요, 본인들이!」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상으로 투표를……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6인 중 찬성 168인, 반대 79인, 기권 9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에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조명철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철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조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역외탈세 방지를 강화해서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미소명 과태료를 2배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정안은 개정안 보완 방안으로서 미신고한 국외소득과 해외채산을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그리고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조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에 46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7인 중 찬성 253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에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강석훈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훈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서초을 지역구의 강석훈 의원입니다.

저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추가 공제율 1% 인상을 철회하며 R&D 세액공제 당기분 방식의 세액공제율을 4%에서 3%로 1%p 인하하였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특허권 등의 대여소득에 대해서도 25% 세액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서민·중산층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적용 대상을 총 급여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인 자로 확대하며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소득의 세액감면율을 20%에서 50%로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넷째,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경우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새만금사업 지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여야 원내대표께서 합의하시거나 또는 저희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표결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강석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연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이언주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반대를 한다기 보다는 굉장히 미흡한 안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시장경제 체제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경제활동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기형적인 경제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비정상적인 경제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경제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했고 국민은 박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특혜는 계속되고 있고 불공정한 분배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여전히 살기 힘든 경제 사정에 지금 아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2년 5년간 경제성장률이 17%였습니다. 그런데 그 5년간 실질임금 증가율은 2.5%에 불과했습니다. 그 차액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제성장의 과실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작금의 경제 양극화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여실히 보여 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질임금 증가율이 낮게 유지되니 민간소비가 줄어들고 민간소비가 줄어드니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이런 악순환을 저회는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제구조, 불공정한 분배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상정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정의롭지 못한 조세정책,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혜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높지도 않은 수준의 법인세에 각종 세액공제까지 해서 대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실효세율이 OECD 주요국 대비 6% 이상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은 수익이 날 만한 곳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투자를 하고 아무리 투자하라고 해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운영 원리에 충실할 뿐입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활동에 왜 혈세를 깎아 줘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R&D 투자세액공제가 첨단기술에만 해당되는 것

이 아니란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입니다. 대기업 퍼주기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초과학연구비마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겠다는 기재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기업 연구 세액은 왜 공제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경제정책입니까?

박근혜정부가 정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망 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싶다면 기초과학연구를 위해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3년 삼성전자는 R&D 연구인력 세액공제만 1조 3600억 원을 받아서 37만여 국내 중소기업 전체 R&D 공제비용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과 사내유보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고 부자기업에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세액공제를 해줘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부는, 경제성장의 과실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수정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진전된 법안이 상정돼 있지 않고 그 안에 중고차 매매 의제매입세액공제, 외식업체 재료비 공제한도에 대한 부분 이런 서민을 위한 공제제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안에 불가피하게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 대기업 세액공제 혜택 일부 인하가 아닌 사실은 결국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대체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까? 경제성장에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과실을 향유케 하고 경제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당면한, 갖고 있는 그런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록 이 수정안에 찬성하더라도 이런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언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살아 있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재벌일가 등 최고소득층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소득세 누진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포함된 이 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배당소득 증대세제 세수 감면 효과가 연간 27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2013년 기준이고 올해와 내년 상황에서 추계해 보면 삼성이건희 회장 한 명의 감면 혜택만 84억 원입니다. 삼성전자 한 개 기업의 배당에 대한 세수 감소액만 270억 원을 넘습니다. 엄밀한 세수 추계와 배당소득 효과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졸속 법안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 워런 버핏은 자신의 비서보다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버핏세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최고소득자들의 주요 수입원이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배당소득세율이 근로소득세율보다 낮아서 오히려 역진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담뱃세는 2000원이나 올려서 서민들 주머니는 탈탈 털고 최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깎아 준다…… 이것은 국내 소비가 오히려 움츠러들어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입해서는 안 될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돈을 풀어서 내수를 진작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취지와도 다르고 시장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개정안이 도대체 왜 올라왔습니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초부터 갈등을 빚어왔던 사건 그것이 십상시(十常侍)의 국정 농단이 되었던, 대통령 동생의 국정 개입이 되었던, 나라살림은 어려운데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법안 검토를 엄정하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경제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회가 철저히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도와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9인 중 찬성 223인, 반대 19인, 기권 27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강석훈 의원 외 4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재 의원** 포항시 남구·울릉군, 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입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세의 부과와 징수를 위하여 외국세관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서 관세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둘째 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수리용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감면율의 축소 시행 시기를 현행 2015년 1월 1일에서 2017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인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박명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8인 중 찬성 254인, 반대 4인, 기권 10인으로서 강석훈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윤영석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 정의화 윤영석 의원님 잠깐만요. 뭐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메모가,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윤 의원님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시00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은 금연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정종섭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윤영석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52조2항은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담배소비세율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것은 좀 더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에 이 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존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청래입니다.

방금 윤영석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안에 물가연동제로 담배소비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에 대한 위헌소지가 100%기 때문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정안도 원안도 다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담뱃세 관련된 법은 4개 법안입니다. 아까 통과된 개별소비세, 아쉽지만 통과되었습니다.

담뱃세가 호화사치품에 매겼던 예전의 특별소비세, 개별소비세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담배

가 어떻게 호화사치품입니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건강을 생각해서 담뱃세를 인상한다고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얼마를 올려야 세수가 가장 증대되는가를 거꾸로 계산해서 2000원을 올려야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해서 2000원 안이 형성된 겁니다.

여당 의원님 일부에서도 ‘2000원은 너무 과도하다’ ‘1500원이 적당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정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통법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반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안행위 법안심사소위원을 박탈해 갔습니다. 보건복지위, 기재위 논의하기도조차……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마치 자구수정 뒤처리나 하라는 예산부수법안 선정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 세금 깎아 준 것을 담뱃세를 통해서, 서민 호주머니에서 그 세금을 메꾸겠다는 정부의 그 의도를 우리 국회가 반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법 절차도 위반해서 불법 예산 소지가 많습니다.

지금 여야 지도부가 합의해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국가가 이자를 메꿔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명심하십시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재정법은 공유재산 조성에 관한 예산, 소방예산, 천재지변 예산 그리고 지방채 차환에 필요한 예산, 이 네 가지만 엄격하게 지방채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 부족분이나 교직원 명퇴수당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꾸라는 것은 법 개정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고, 안행위에서도 단 한 차례조차 논의한 바 없습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그 법을 부수법안으로 후속조치를 해 달라라고 안행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 안 된다면 오늘 통과되는 예산이 무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담뱃세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에서 이 네 가지 법안,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부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375.5조 이 예산 통과는 온데간데없고 ‘담뱃값만 2000원 올렸다’ ‘여야 합의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시려 하십니까?

의원님 여러분!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은 너무나 과도한 것입니다. 오늘 국회가 살아 있음을 여러분들께서 보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안 통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우리 국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예산심사권까지 다 박탈하고, 그냥 부수법안이 낀 것도, 아닌 것도 다 지정해서 여기서 그냥 손들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

국회의 자존심을 살려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177인, 반대 86인, 기권 13인으로서 윤영석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시0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1항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정부 제출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쉐킷 및 그 밖의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고 담배갑포장지 및 광고에 경고그림 표기 도입을 통해서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법률안이 정부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 존함)

○**의장 정의화** 문형표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명수 의원 외 4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입니다.

앞서 정부 제출 법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설명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고그림 규정과 건강증진부담금에 적용되는 물가연동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고그림 규정 등은 추후 상임위원회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심도 있게 심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법률안이 수정 제안한 바와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 존함)

○**의장 정의화**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용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을 연구하고 일관되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 담뱃값 인상은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담뱃값 인상안은 담배의 조세와 부담금 구조를 완전히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인상안의 가장 큰 특징은 국세의 몫을 대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원래 국세 항목으로는 모든 상품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외에 별도의 세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서 국세는 776원 인상되는 반면 지방세는 488원, 건강증진기금은 487원만을 인상하게 됩니다. 국세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인상안입니다.

한마디로 증세안이고 그 대상은 서민입니다. 서민 증세안입니다. 금연정책이라는 말은 핑계일 뿐입니다. 만일 이번 인상안이 정말 금연을 위한 것이었다면 건강증진기금을 위주로 인상안을 만들고 이를 재원으로 금연과 질병예방 예산을 대폭 인상하는 예산안을 제출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연과 건강관리 예산은 아무 주목을 받지 못했고 예산 증액은 통상적인 수준에 그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금연정책으로서의 담뱃값 인상은 가격은 올리되 건강증진기금으로 이를 모아서 금연, 건강증진, 질병예방, 공공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에 재투자해야 금연 효과를 높이고 서민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담뱃값 인상안에는 이런 생각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기금의 운영은 난맥상입니다. 건강증진법에 맞지 않는 목적에 위법적으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3000여억 원에 달합니다.

저는 작년 금년 연이어서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한 푼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이 목적 외 사용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건강증진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돈을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 4500억 빌렸고 내년엔 4600억을 빌립니다. 부채 총액은 내년 말 1조 5000억에 달하고 이자가 100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여당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방송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탈법 불법적인 건강증진 사용을 고치겠다.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의 빚을 갚아 주겠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기금은 빚을 내서 불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왜 담뱃값이 증세의 목적으로 악용돼야 합니까? 증세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소득세 등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합니다. 부자 증세를 회피하려고 만만한 증세의 항목으로 담뱃값을 지목한 것 아닙니까? 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담배 피우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건지도 않고 제대로 쓰지도 않는 담뱃값 인상, 기재부의 농간에 늘어나는 담뱃값 인상, 금연정책을 포장하여 꾀수를 부리는 서민 증세, 이런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가 동조를 해 준다면 국회는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잘못된 담뱃값 인상을 위해 상정된 국민건강증진법, 부결시켜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용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조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천안갑 양승조 의원입니다.

저는 담배가격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은 한마디로 꾀수 증세이고 서민 증세입니다. 정부가 금연과 건강을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세수부족을 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안이 금연이 아니라 증세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가격인상폭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담뱃값이 4500원일 때 추가세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의 인상안은 금연효과가 가장 높은 가격이 아니라 추가세수가 가장 큰 가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담배가격 2000원 인상되면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새로 쥐어짜는 증가세수가 최소 2조 7800억에서 최대 5조 456억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서민을 쥐어짜서 늘어나는 세수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금연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액수는 정부안에 의하더라도 1521억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추정세수 증가분의 5%, 예산정책처 추정세수 증가분의 3%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금연과 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입니까?

정부는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금연지원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결국 증세논란 회피를 위한 꾀수라는 것이 드러나는 예산편성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소비여력을 늘려 주고 이를 통해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를 활성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 법안은 이와 정반대로 가는 법안입니다. 서민들의 살림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 부족분을 서민들에게 짜내겠다는 것입니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법안입니다.

또한 담배가격 인상은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2.1%인데 30대 40대 남성 흡연율은 각각 54.5% 48%입니다. 저소득층 흡연율은 47.5%로 고소득층보다 10.9%나 높았습니다. 결국 담뱃값을 올리면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부담을 한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뜻합니다. 저소득층과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것이고 소비는 더욱 위축될 것이며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 명약관화입니다.

이제는 잊어버린 풍경인 60년대 70년대 길거리에서 남이 피우다 버린 꾀초를 주워 피우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담배를 하루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1년간의 세금 부담은 약 120만 원 정도로 시가 9억 원 아파트 소유자의 1년간 재산세액과 맞먹고, 평균적으로 연봉 4500~5000만 원 정도 근로자의 소득세 규모에 해당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데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664억 3900만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급격한 담배가격 인상은 사제기나 저가담배 밀수, 물가상승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담배가격 인상 요인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80%를 인상하는 2000원 인상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예상되고 서민 증세 꿈수에 불과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결론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서민 증세이자 꿈수 증세입니다. 서민과 어르신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는 법안입니다. 수정안, 원안 모두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야를 떠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반대투표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양승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172인, 반대 90인, 기권 16인으로서 이명수 의원 외 4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시22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술료를 세입세출 내 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장비·시설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률안에 대하여 찬성 표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 존 함)

○의장 정의화 윤상직 장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동철 의원 등 3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입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안은 고난도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사후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나 고난도 기술개발은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연구비를 보전하여 주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사후 포상금 제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설하는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재원인 기술료는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이므로 기금 운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이 중 일부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모쪼록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 존 함)

○의장 정의화 김동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67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김동철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1시2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3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입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담금의 일종으로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금 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둘째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일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던 것을 수익금 관리의 투명성을 위하여 별도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이나 주최단체 지원 등에 사용되던 것까지를 포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종덕 장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서영교 의원 등 40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랑갑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입니다.

지금 막 장관으로부터 골프장 입장료 부담금을 폐지해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몇만 원 중의 일부 1000~3000원 이것을 폐지하자는 안을 국민의 부담이라며 내놓는다면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입장료 부담금은 1000~3000원입니다. 이것을 정부안대로 폐지할 경우 2015년 400억 원을 비롯해서 5년 동안 2000억 원의 세수가 손실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고 내놓았는지 여야 의원들은 모두 이 법안은 안 된다 입장에 동의해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폐지내용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수가 모자라다며 담뱃세에까지 세금을 물리는 정부안이 모자라다더니 왜 골프장 입장료 1000원 내지 3000원을 없애자고 하는지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 수정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회원골프장의 입장료 부담금 징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 넘어가고 이렇게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제안드린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서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석 275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0인, 기권 15인으로서 서영교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김세연·도종환·김태원·박창식·김광진·민병주·신경민·서영교·박인숙·정진후·정갑윤·하대경·김춘진·이진복·김무성·박민식·김제남·박기춘·이운룡·이낙연·윤관석·이석현·한명숙·이만우·손인춘·김장실·강은희·문대성·유기홍·유은혜·이에리사 의원 발의)

(21시3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4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議員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 및 영화·비디오물 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조성되었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과금으로 징수하여 2014년 현재 약 250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영화발전기금은 매년 약 550억 원의 사업비를 통해 예술·독립영화와 다양성 영화의 제작 및 상영에 대한 지원, 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영화제작 지원과 각종 영화제 개최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한국영화의 양적·질적 성장에 큰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부과금을 2014년까지만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부과금 징수가 중단될 경우 2019년에는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것입니다.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되면 소형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어 한국영화의 다양성이 저해되고 이는 결국 한국영화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대형 멀티플렉스의 급격한 상영관 점유 확대에 인하여 사라지고 있는 영세영화 상영관에 대한 지원과 일부 대도시 지역에 영화 관련 사업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문화산업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주민의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한 지원도 그 길이 막힐 우려가 큼니다.

이에 한국영화의 발전과 다양성 확대를 위한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 징수를 2021년까지 연장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영세한 영화관 사업자와 문화낙후지역의 영화 향유권 개선을 위한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법률안 발의 당시에는 일몰 시한을 감안하여 원활한 법안 처리를 예상하였으나 기금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하여는 부칙 1조 시행일 규정에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정도 아울러 설명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본 법률안을 검토하시고 한국 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법률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김세연 의원 외 29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박창식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식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 소속 박창식 의원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김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서 동 개정안의 부칙에 있는 시행 기간을 2015년 1월 1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영화발전기금의 부과금 징수가 중단 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이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 존 함)

○**의장 정의화** 박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47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서 김세연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정부의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 존 함)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문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소회의 한 말씀을 올리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을 지키는 역사적인 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회가 이 수정안을 통과한다면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것이고 국민 경제의 예측 가능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우리 국민 들께서는 이 순간 12년 동안 보지 못한 국회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 본회의장에 모든 국민이 시선을 집중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지난 10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6일간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진행하였고, 일곱 차례의 소위원회와 별도의 2개 소위원회 그리고 여러 차례 간사 간의 협의 등을 통해서 휴일까지 반납하고 자정을 넘어 새벽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문제 등 예비심사 지연으로 예결위 종합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것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예결위에서 심사한 사항들을 토대

15. 2015년도 예산안

16.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7.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1시37분)

로 여와 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정과 그리고 경제활력 제고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방점을 둔 채 예결위원회의 심사의 취지를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예산안 심사에 진력을 다하여 주신 오십 분의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와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새누리당 이학재 간사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간사님에게 더욱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열 다섯 분의 소위원회, 소소위원장님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376조 원 중 예산안은 259조 1000억 원으로서 이 중 2조 8000억 원을 감액하였고 3조 8000억을 증액하여 1조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상임위의 심사 결과를 원칙으로 존중하였으며,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 그리고 사업계획이 미흡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감액의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한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재정수지를 정부안 대비 약 2000억 원 개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총 5064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을 1376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맞춤형 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에 대한 298억 원과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예산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 원 증가한 17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지원비 10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홍문표 예산결산위원장님 노고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안전에 대해서는 다섯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무안군 신안군 출신 이윤석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12년 만에 시한 내에 처리하게 된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가의 예산은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횡포에 막혀 우리 국회가 너무도 무기력하였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2007년 개항할 당시 가까운 미래에 활주로 연장이 필요하다 하여 국비 46억 원을 들여 활주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때문에 매년 전라남도가 부지가 이미 확보된 무안공항 활주로 400m 연장사업에 예산 반영을 절실하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공항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고 도에서 건의하고 상임위에서도 올린 예산을 묵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전라남도 도청이 시급한 사업으로 건의를 했지만 또다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거부로 묵살이 되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긴급상황 시 24시간 대체공항의 임무지입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는 현재 2800m로써 747기종과 같은 항공기의 이착륙이 매우 위험합니다. 적어도 3200m가 있어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갖춰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대형기의 이착륙이 가능해져 공항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안공항에 KTX가 연결이 됩니다. 국토 서남권 교통의 중심이 될 것이며 호남지역의 중심 공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인색한 것입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부의 예산편성에 대해 국회의장께도 도움을 청했고 찾아뵙고 설명하고 부

탁도 드렸습니다. 의장님께 입법부 수장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차원을 위해서라도 행정부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지적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기재부 관계자 및 최경환 부총리께도 물꼬를 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전남도청과 지역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매년 이토록 매몰차게 묵살하는 것이 전형적인 지역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귀한 세금이 정부의 관리 몇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 예산편성을 가볍게 생각하는 무례함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성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우리 국회의 예산심사권도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저는 이번 2015년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국민들과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 앞에서 반대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꼼꼼하게 감시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376조에 이르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오후 7시가 되어서야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교섭단체 양당의 비공개 회의 속에서 결정되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감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하는 헌법기관이자 나라의 살림살이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러한 최소한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살기 힘들어서 담배 한 모금으로 시름을 달래는 서민들에 대해 금연이라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폭탄 인상을 하고

최소한의 조세형평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율을 대폭 상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질적인 증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같은 실질적 증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세 인상은 슬그머니 빠진 채 특혜성 대기업 비과세·감면은 새해에도 3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수많은 방위산업 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거의 무조건 통과되는 국방예산, 전시작전권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합의해 준 방위분담금 예산은 '묻지 마 예산'으로 통과되고 그럼으로써 국방부가 또 하나의 성역임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을 파괴시킨 자들을 위한 4대강 보은 예산, 환경파괴가 자명한 서울-문산 구간을 비롯한 민자도로 건설 예산, 타당성 검토 없는 소규모 댐 건설 예산 등 토건 잔치는 내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복지 예산은 순증이 거의 없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인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지방채 발행과 우회 지원이라는 꼼수로 봉합함으로써 또다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상급식도 흔들리고 각종 FTA로 붕괴가 시작된 농정 예산도 별다른 대책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장애인 고속버스 시범사업 예산은 삭감되었고 4년 동안 동결되었던 보육료는 새해에도 10% 인상이라고 하는 상임위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우리 농업 지키기,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건강 보장성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오늘 올라온 수정예산안은 이러한 중요한 예산들을 반영하지 않았기에 반대합니다.

오늘 올라온 정부 원안과 수정한 예산안을 모두 반대하면서 지금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나와 있는 말 중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그러한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대의견이 실제 이행이 되려면 그 분야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은 증액시키지 않고 말로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예산안 수정동의안 만드시느라 홍문표 예결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계수조정소위의 위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 원안은 물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부처별 예산안과 예결위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수정동의안에 반영됐는지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37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안의 표결을 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단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법정시한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정시한만 지키면 될 합니까?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우리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국회의 예산심의·의결권한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의원들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합니까? 정말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절차상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상정된 원안은 물론 수정동의안 또한 무책임한 적자예산이고 복지 중단 선언 예산이자 SOC 토건 부활 예산이며 지방재정 파탄 예산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인 전년 대비 5.7% 증가한 376조 원의 확장적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경기부양에 힘을 쏟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는 33조 6000억 원에 달합니다. 세출이 늘어난 이른바 확장적 재정정책 때문이 아닙니다. MB 정부 때부터 지속된 감세로 인한 구조적인 세입기반 약화와 작년에 이어 올해도 10조 원 결손이 예상되는 누적된 세수결손 때문입니다.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임기 말까지 적자재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16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원안은 물론 수정동의안에 무슨 해법이 담겨 있습니까? 정부 원안에서 6000억 원가량을 순삭감한 것 이외에 그 어떤 해법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입 측면에서 지난 5년간 재벌기업에 무려 26조 5000억 원의 감세 혜택을 몰아 준 법인세 최고세율 감세를 철회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근거도 없는 기업 투자 위축 운운하며 한사코 이를 외면했습니다. ‘법인세 감세 반드시 철회시키겠다’ 이렇게 호언했지만 제1 야당,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물러섰습니다. 고작 얻은 것이라곤 담뱃값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5조 원의 세부담을 떠안기면서 5000억 원의 비과세·감면을 줄인 것뿐입니다.

매년 수십조의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그 원인은 전혀 손도 대지 못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예산안입니다. 세출 측면에서 일부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4대강사업 예산 등 SOC 토건 부활 예산이 정부 원안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복지 예산 역시 누리과정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우회적으로 뺏길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대통령이 공약했던 무상보육의 일환인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 달라고 야당이 읍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과 초등돌봄 예산, 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지켜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여당은 오히려 반대하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웃지 못할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끼워 넣은 사업타당성도 없는 창조경제 예산, 대통령 예산은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수정동의안에도 포함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재정에 드리워진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복지는 뒷전이며 지난 정권의 부실 뒤처리와 SOC 토건 부활 그리고 정권 관심사에만 우선순위를 둔 예산안을 이대로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의 삶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새해 예산안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원안과 수정동의안 모두 부결시켜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의화 박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노원을 국회의원 우원식입니다.

예산안은 숫자로 표현하는 국가의 정책지표입니다. 국가가 대다수 평범한 국민들을 보살피는 의무에 충실한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2015년 예산안을 처리하기까지 국회가 국민의 예산을 만들기 위해 충실히 그 의무를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12월 2일 무조건 처리해야 한다며 처리 속도에만 집착하면서 방향은 잘못 잡았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아집과 독선에서 출발한 4대강 사업, 그것은 이미 실패로 끝났습니다. 30조에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 강바닥까지 파헤쳐 가면서 밀어붙인 사업의 진실은, 이제 4대강에 남은 것은 언젠가 건어 내야 될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대표마저 이제 식수원으로 쓰지 말자는 말까지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반성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대통령이 떠나도 국민의 고통은 현재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 예산에도 4대강 망령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예산에는 내년에도 4대강사업 수공 이자보전 3090억, 2010년부터 누적적으로 따지면 1조 6131억 원이 들어가 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 1622억 여기에 더해 4대강사업인 경인운하 보상비 800억, 총 5512억을 또다시 국민의 혈세를 털어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집권여당은 참으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괴물 같은 예산에 혈세를 퍼 주는 정부와 여당이 공식적인 통계로만 600만이 넘는 비정규직,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말로는 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예산으로 풀랑 6500명에 단돈 220억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우리의 소중한 국민에게 쓸 돈, 생존을 위협받아 가면서 만들어야 하는 ‘을’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마저도 깎아 버리고 있

다는 것입니다. 야당이 그렇게 외쳐도 쥐꼬리만큼 올려 주는, 반영하는 정부 여당은 차라리 잔인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끝내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거부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3항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37만 명에 달하는 학교 비정규직은 임금도 상여금도 성과금도 모두 차별받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법을 어기고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 하자는 이 상식적인 주장마저 정부와 집권 여당은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교육부는 중앙정부가 예산편성에 노력 하자는 내용마저도, 그런 부대의견마저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최저임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경비노동자 예산도 당초 285억 요구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51억만 반영했습니다.

이것 너무하지 않습니까? 주무 부처마저 100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아파트 경비원들의 해고 사태에 대해서 여당은 책임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 독선과 아집으로 나라 살림 거덜 내고 국토를 절단 낸 전임 대통령의 나라입니까? 그 안에서 여전히 권력을 누리는 동조자들의 나라입니까? 세금조차 성역으로 바리케이드 치는 몇몇 대기업들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을 해결하고자 하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나라입니다. 최저임금 받고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우리 아버지들의 나라입니다.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나라입니다.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의 나라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분들이 포함된 힘없고 백 없는 평범한 국민들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2015년 예산안이 국민의 예산안이 되지 못한 오늘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국회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예산안에 반대함으로써 국민의 국회 그리고 국민의 국가가 되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의화 우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의 이학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석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또한 능력만 된다면 많은 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합니다. 하지만 왜 반대토론 의원님들의 의견과 동료 의원님, 더구나 국민의 요구를 모두 다 담아내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을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지난 10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11월 6일부터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예결위원 오십 분께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거쳤습니다.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예산소위가 가동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홍문표 위원장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춘석 간사님, 강창일 위원님, 민병두 위원님, 황주홍 위원님, 송호창 위원님, 김현미 위원님, 박완주 위원님과 새누리당의 이현재 위원님, 이한성 위원님, 김희국 위원님, 김도읍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윤영석 위원님, 그리고 제가 새벽 2시를 넘긴 날도 있고 주말은 모두 반납하였고 자정을 넘겨 가며 심사를 하였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소위도 구성을 하였습니다.

누리과정과 관련된 과행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여 정부 원안을 자동부의하여 놓은

상태에서 좀 더 충실한 여야 합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상임위 심사자료와 예결위 심의자료를 모두 가지고 수정안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결과물이 현재의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은 당초 376조의 정부 원안을 3조 6000억 감액하였고 의원님과 국민들의 요구가 꼭 필요한 예산 3조를 증액하여 총 6조 6000억 원을 수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과 국민 소망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것은 누리과정으로 인한 갑작스런 예산소위와 정부 예산의 총액 한계 그리고 헌법 제54조의 정부 동의 없이 예산비목 신설과 예산 증액이 불가한 관계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3조 6000억 원의 감액 재원으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요구한 16조 원의 증액 요구를 모두 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국회가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미흡하지만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 수정한 수정안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누리과정도 빠지고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안도 빠지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빠지고 FTA 대비 농민 지원 증액도 빠진 정부의 원안을 선택하실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간입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학재 간사님 이번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에 따라서 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이 발의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이 설치된 비목에 대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롭게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이 발의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73인 중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서 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이 발의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박수를 치지 마십시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표 의원 앞서 예산안과 관련된 기금운용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개괄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부 총지출 376조 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116조 8000억 원입니다. 이 중 2조 1000억 원을 감액하고 5000억을 증액하여 1조 6000억을 순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등을 위한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 원 증가한 220억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경비단속직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51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미숙아 그리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을 2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하는 데 예산 200억을 신규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억 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예산 33억 원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 및 운영비 지원 예산을 11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수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를 평온히 마무리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가족마다 건강한 행운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홍문표 예결위원장님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국가재정법 제69조에 따라서 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이 발의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증액된 부분이나 새로 설치된 과목에 대하여 정부 측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정부는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되거나 새롭게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최경환 부총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이 발의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68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6인, 기권 23

인으로서 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이 발의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 액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4인 중 찬성 229인, 반대 11인, 기권 24인으로서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 액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정홍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여야 합의하에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 의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없이 애써 주신 홍문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는 의원님들이 오늘 의결해 주신 대로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안전사회의 구현을 위한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SOC 사업 등 재정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조경제의 육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소상공인·비정규직 지원 확대,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재해 취약시설 개선과 노후 소방장비 지원 등 큰 폭으로 확대된 안전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정 수급 방지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적극 조정하는 등 집행 과정에서 재정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의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 경제는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엔화 약세 등으로 인한 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 등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예산안이 적기에 처리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의원님들의 노고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정홍원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지만 헌법이 정한 기일을 지켜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법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머리를 맞대면 대승적으로 타협하고 생산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치적인 대립에 의해 헌법을 번번이 무시해 온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이 쌓인다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번 예산안의 적법 처리가 비정상의 정치가 정상으로 정치로 전환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이를 통해 헌법을 지키며 예산안이 처리되는 전통이 굳건히 확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예산안의 정상 처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야 정당 지도부와 예결위 위원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께 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도 예년에 비해서 조기에 의결된 이번 예

산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귀중한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매년 예산이 12월 2일에는 통과되는 전통이 변함 없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2시24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장은 국회법 제85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를 거쳐서 심사기간을 지정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고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서 오늘 의사일정 제27항으로 추가상정하여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백재현·김재원·강기윤·이이재·김도읍·김현숙·윤영석·염동열·박인숙·김정록·이완구·주호영·이장우·안규백·유기홍·유성엽·진성준·박완주·박홍근·우윤근·윤관석·조정식·김관영·박범계·김광진·문희상·문병호 의원 발의)

(22시25분)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백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경기 광명갑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야는 지난 10월 31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99일 만에 이른바 세월호 3법과 관련 합의사

항으로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세 도입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치권의 국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소방 업무는 원래 국가책임 업무였으나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광역자치단체가 일선 소방관서의 운영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소방예산 3조 2000억 가운데 중앙정부 지출은 고작 1713억으로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인 3조 480억 원은 전국 시도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재정 중 일반재원의 70%가 소방안전 재원에 투입되고 있는 등 소방안전 관련 재원 구조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고자 지방교부세의 새로운 종류로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담배세로 한 이유는 담배로 인한 화재가 1981년 9%에서 2012년에는 15.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전체 화재 원인 가운데서도 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담배에 대한 화재 과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신설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방방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전국 어디에서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방안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 법안은 기술한 바와 같은 취지로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백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석 262인 중 찬성 227인, 반대 18인, 기권 17

인으로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22시28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부좌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부좌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부좌현 의원입니다.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안한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는 올해 225조 원보다 5조 원이 증액된 230조 원으로 이 중 본한도는 220조 원, 예비한도는 10조 원이며, 본한도 중 대금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25조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년도 수출증가율 및 경제성장을 전망,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확대 필요성, 유효계약액 급증에 따른 무역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상황,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 소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올해보다 2.2% 증가한 정부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부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9인, 기권 3인으로서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1.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22.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22시32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9항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유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 유기준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입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통과시키느라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과 2건의 국군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 등 총 4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및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우리나라와 호주 및 캐나다 양국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서비스 및 정부조달시장 개방 폭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제도의 선진화를 통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한층 확대 강화하려는 것인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건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이나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FTA 타결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지

원하고자 저를 포함한 양 교섭단체의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한 몇 분 의원들로 별도의 국회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피해보전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축산정책자금 금리인하,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 도축·도계장 전기요금 인하, 농가 사료 직거래자금 확대, 영농상속공제 한도액 확대 등 9가지 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피해보전 직불제의 구체적 현실화 방안이나 무역 이득공유제 법제화 또는 그 대안에 대하여는 한·중 FTA 국내 보완대책 마련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 등 정부 측에 대해 상기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유엔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레바논 및 남수단에 파견 중인 우리나라의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의 파견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견지역의 현지 주민 및 주둔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리나라 파견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여 지속적인 주둔을 요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아울러 금번 2건에 대한 파견연장 동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한·레바논 및 한·남수단 간 보다 두터운 신뢰관계 및 우호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유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 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한 분의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제남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김제남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FTA 가속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오늘 상정된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를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FTA는 한마디로 졸속으로 추진·타결된 FTA입니다. 협정문이 공개되기까지 국회와 국민이 협상의 내용과 협정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깜깜이 FTA입니다. 관련 기업 등 이해당사자조차 협상 타결이 발표되면 그때서야 내용을 알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상정된 호주 그리고 캐나다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3년 반 동안 중단되었던 호주와의 FTA를 지난해 말 겨우 두 차례 협상을 통해서 타결을 선언했고 소리 소문 없이 협정문에 가서명한 뒤에 해당 상임위에 단 두 페이지짜리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통상절차법에 따른 보고가 아닌 협상 타결 통보를 한 것입니다.

캐나다와의 FT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5년 8개월 동안 중단된 협상을 지난해 11월 단 한 차례의 협상을 통해 타결 선언을 했습니다. 협상을 재개하면서 통상조약법에 따른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국회에 단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협상을 개시한 지 8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해관계자와 재논의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검토조차 생략했습니다.

통상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며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통상 비밀주의·밀실주의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타결된 FTA에 대해 국회의 자료요구조차 제출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도되었듯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위원장께서 요청한 뉴질랜드와의 FTA 관련 동향보고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한 페이지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답변 제출 직후 정부는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국회와 국민은 FTA 추진에 있어서 협의와 논의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통보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투자자·국가소송제 관련해서도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준동의하면서 관련해서 우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협상 등 미국 측과 논의를

다시 하라 했고 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라고 꼭 필요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요구에 대해서 전혀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시되고 있습니다. 호주 및 캐나다 FTA에는 국회가 우려한 앞서 ISD 조항에 변화가 없이 한미 FTA와 똑같은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우리 정부가 나서서 ISD 투명성 규칙을 FTA에서 적용시키지 말자고 호주 측에 요구하는 등 국회의 우려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요구인 영세상인을 비롯한 중소기업 보호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야 합의로 어렵게 만든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협정 배제를 담지도 않았고, 중소기업 작업반조차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정부 조달에 있어 모든 형태의 중소기업 우대를 협정에서 포괄적으로 배제시켰지만 우리 정부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협상을 타결한 후에도 국회에 올린 국회 비준안 역시 줄속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비준동의안에 첨부된 영향평가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앞부분에는 농업생산이 늘어난다고 했다가 뒷부분에는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등 줄속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FTA로 농수산업에 10년 동안 2조 1000억 원의 투융자계획을 내놓고 또 10년간 총 3372억 원의 세입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입 대책은 액수가 미비하다, 필요 없다 하고 약 2조 1000억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수립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무대책인 상태로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국회 무시와 국민 무시는 국회가 FTA를 너무 쉽게 통과시켜 주기 때문에 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이 무섭지 않기 때문에 국회 보고도, 국민의견 수립도 무시하는 줄속 협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국회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준동의안을 이 상태로 통과시킨다면 앞으로 줄속 타결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비준동의를 부결시키고 소관 위원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한 후에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9인 중 찬성 189인, 반대 31인, 기권 29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9인 중 찬성 188인, 반대 29인, 기권 3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마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51인 중 찬성 218인, 반대 14인, 기권 19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마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9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7인, 기권 18인으로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 (UNMISS)」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3.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4.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22시4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3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윤후덕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윤후덕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해외 파견 동의안 2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주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2015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아크부대의 파견은 그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연장되는 데 따른 우려가 매우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국의 국방 교류 협력을 지속시키고 우리 군의 해외 활동 경험과 특수전 훈련 기회의 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보아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

의 파견 기간을 2015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아덴만 해역의 해적 위협이 감소되고는 있으나 소말리아 과도정부의 정치적 불안 등으로 해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연합해군사 등과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과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 등 파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 존함)

○의장 정의화 윤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6인 중 찬성 200인, 반대 27인, 기권 19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43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2인, 기권 16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5.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

(심재권·유기홍·이미경·박혜자·부좌현·박남춘·민병두·최민희·이상직·강동원·문희상·이찬열·김경협·배재정·김춘진·임내현·이석현 의원 발의)

(22시4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5항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대리 심재권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혐한시위로 인해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재특회 등 일부 단체뿐 아니라 일반의 일본 국민에게도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내 재특회 등의 혐한시위가 재일동포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나 반인륜적인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일본 정부가 일본 내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재일동포들이 혐한시위로 인하여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과 사후조치에 적극 나섬과 동시에 일본 정부가 혐한시위 근절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국회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했듯이 일본 내 혐한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종차별적 행위로서 한일 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일본 내 혐한시위 세력에 분명히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심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31인 중 찬성 230인, 기권 1인으로서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22시5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6항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이명수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충남 아산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는 작년 9월 중앙·지방간 기능과 재원 조정방안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에서 지원해 오던 노인양로시설·장애인생활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하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아동시설 운영사업은 이 국고환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래의 소중한 아동 보호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이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의 보호는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견지에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 국회는 정부가 지방 이양된 아동시설 운영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환원조치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확고하게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좌석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처럼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중앙과 지방 간에 누가 재원을 부담할 것인가 서로 갈등·대립되는 양상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원 부담과 분담의 합리적인 조정 시스템과 재정 관련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함께 촉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으로 보 존함)

○의장 정의화 이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3인 중 찬성 224인, 기권 9인으로서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서 이의가 없으시면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문금 각출의 건(의장 제의)

(22시56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위문금 각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말이면 국군장병을 격려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약간의 위문금을 모금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 여러분의 12월분 수당에서 0.5% 상당액을 위문금으로 각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정의화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22시58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되도록이면 안 바쁘시면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의원 퇴장)

의원님들 한 5분만 더 앉아 계시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조금 정리가 되면 시작합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을 당선시킨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일이 민주사회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드립니다. 수많은 선열의 피땀으로 키워 온 민주주의를 박근혜정부가 마구 흔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치결사의 자유를 빼앗는 문제이기에 어느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기각판결을 바라는 민심이 대세로 되고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변론공판 하루 전인 11월 24일 정부 측은 급하게 참고자료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중 증거채택도 되지 않은 자료 하나를 하태경 의원이 3일 뒤에 대단한 것인 양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이를 받아서 조·중·동과 종편은 진

보당과 직접 관련이 없고 출처도 불분명한 괴문서를 인용하면서 연일 헌법재판소에 진보당 해산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뢰성 없는 자료와 정당해산 주장으로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정당결사의 자유, 정치표현의 자유를 지키려는 민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진보당 해산 논거로 내란음모세력이라느니 북과 연계된 RO가 존재한다느니 하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 RO 불인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청구인 대표 최종 발언에서는 법리적인 논거 대신 ‘암적 존재’라는 선동적인 표현과 색깔론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10만 당원이 활동하고 15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앞장서 온 정당을 색깔론으로 몰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 주십시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정부는 17만 쪽에 달하는 문서의 트럭을 헌법재판소에 증거로 제출했지만 그 속에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 중 무엇이 위헌이라는 증거는 단 한 쪽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부 측은 정당해산제도가 있는 나라에서 합법 정당이 어떻게 드러내 놓고 위헌적 목적과 활동을 하겠느냐며 머릿속에 숨어 있는 목적을 찾아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위헌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위헌정당으로 그동안 규정해온 정부야말로 국민과 통합진보당에게 사죄를 해야 마땅합니다. 대다수 법학자들도 정당 해산은 최소한 민주주의 보루인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 위에서 법리적용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보당 해산청구는 진보당에 투표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권리를 빼앗는 시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께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보내긴 하겠습니다만 속기록에 남기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일 안에 의결한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다행스럽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결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부결되는 상황이 초래된 것도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는 국회 운영의 기본원칙입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지도부를 비롯해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상임위 중심 국회 운영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실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03분 산회)

.....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강석훈 의원 외 47인 발의)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4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예리	이완구	이완영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장우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영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2인)

정청래 홍종학

기권 의원(6인)

김기식	김민기	김영록	박민수
변재일	진선미		

(우원식 의원 착오로 이인영 의원석 표결기 조작. 실제 투표 의원 249인, 기권 의원 6인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강석훈 의원 외 47인 발의)

투표 의원(248인)

찬성 의원(206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회선	김희국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운룡 이윤석 이장우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영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반대 의원(32인)

강기정 강동원 權垠希 김기식
 김미희 김영록 김재연 김제남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양승조
 오병윤 오제세 우원식 유대운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상규
 이원욱 전정희 정진후 정청래
 조경태 진선미 홍익표 홍종학

기권 의원(10인)

김기준 김민기 김영환 김태년
 박민수 박홍근 유은혜 윤상현
 이목희 이학영

김영환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중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백재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재옥
 이강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임내현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영
 최봉홍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반대 의원(87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權垠希
 김관영 김기식 김기준 김미희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용익 김우남
 김재연 김제남 김춘진 김현
 김현미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민홍철 박광온 박민수 박범계
 박완주 박원석 박혜자 배재정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기남 신정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강석훈 의원 외 46인 발의)

투표 의원(265인)

찬성 의원(153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세연 김영우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안민석	이인제	이장우	이정현	이종진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학재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대운	이현승	이현재	장윤석	전병헌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전하진	정갑윤	정미경	정수성
은수미	이개호	이상규	이상민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주영순	주호영	한기호	한선교
이종걸	이춘석	이학영	인재근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임수경	전순욱	전정희	전해철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정세균	정진후	정청래	조경태	황진하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재천	한정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기권 의원(25인)

김동철	김태년	김한길	남인순
문병호	민병두	박남춘	박병석
박주선	박홍근	백균기	신계륜
안철수	유승희	유인태	이목희
이미경	이석현	이한구	장병완
정두언	정호준	정희수	최민희
추미애			

반대 의원(108인)

강기정	강동원	권垠希	김관영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재연	김제남	김춘진
김태년	김한길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재인	민병두	박광온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언주
이완영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이한성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순욱	전정희	전해철	정세균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재천	추미애	홍영표
홍익표	홍종학	황우여	황주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

정안(강석훈 의원 외 47인 발의)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113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무성	김상훈	김성곤
김세연	김영우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희상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동우	심윤조	심학봉
안규백	안효대	여상규	염동열
우윤근	원혜영	유기준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윤재옥	이강후
이만우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완구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기권 의원(41인)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김명연	김상민	김성찬	김승남
김용태	김을동	김종태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박남춘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신성범	신의진
심재철	안덕수	양창영	유승민
유인태	유재중	윤명희	이목희

이에리사 이자스민 이재영 이종배
 이종훈 이찬열 정두언 정성호
 정용기 정희수 진영 최민희
 최봉홍
 (정두언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113인, 기권 의원 41인임)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석현 이연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종걸 이찬열 이춘석 이학영
 이한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세균 정용기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동익 최재천
 추미애 한선교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황주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5인)

찬성 의원(94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권은희 김광림 김도읍
 김명연 김무성 김상훈 김성찬
 김세연 김영우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동우 심윤조
 심학봉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유기준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윤영석 윤재옥 이강후 이만우
 이상일 이우현 이운룡 이인제
 이장우 이정현 이종진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현재 장윤석 전하진 정갑윤
 정수성 정의화 조명철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한기호 함진규
 홍문종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123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강창희
 권垠희 김관영 김기식 김기준
 김동철 김미희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재연 김제남 김춘진 김태년
 김태호 김한길 김현미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병호 문재인 민병두 박광온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병석

기권 의원(38인)

경대수 권성동 김기선 김상민
 김성곤 김용태 김을동 김중태
 김태흠 나경원 문대성 문정림
 문희상 배덕광 신경림 신성범
 신의진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효대 우윤근 유승민 윤명희
 이에리사 이자스민 이재영 이종배
 이현승 정성호 정희수 조원진
 조정식 진영 최민희 최봉홍
 황영철 황우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9인)

찬성 의원(258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희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길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회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덕 광
 배 재 정 백 군 기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계 룬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목 희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인 영 이 인 제 이 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의 화 정 진 후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재 천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중 학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반대 의원(1인)

정 청 래

기권 의원(10인)

김 기 식 김 기 준 김 태 년 은 수 미
 이 미 경 이 언 주 이 학 영 전 순 옥
 정 세 균 진 선 미
 (민병주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투표
 의원 269인, 찬성 의원 258인임)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강석훈 의원 외 46인 발의)

투표 의원(256인)

찬성 의원(168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회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경 원 나 성 린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문 회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백 군 기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성 업 유 승 민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영 석 윤 재 옥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정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의 화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영 최 경 환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79인)

강 기 정 강 동 원 강 창 일 권 垠 希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연 김 현 미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도 종 환 문 재 인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민 수 박 병 석
 박 주 선 박 혜 자 배 재 정 부 좌 현
 서 기 호 설 훈 송 호 창
 신 정 훈 안 민 석 안 철 수 양 승 조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은 혜 윤 관 석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개 호
 이 미 경 이 상 민 이 언 주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인 영 이 종 걸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영 임 수 경 전 순 옥
 전 해 철 정 세 균 정 청 래 정 호 준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종 학 홍 영 표

기권 의원(9인)

김 정 록 김 춘 진 김 태 년 문 병 호
 박 남 춘 박 홍 근 변 재 일 유 승 희

유 인 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강석훈 의원 외 46인 발의)

투표 의원(267인)

찬성 의원(253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권 垠 希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경 원 나 성 린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응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덕 광 백 군 기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업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회	윤 영 석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원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회 선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민	김 희 국	김 희 정	나 경 원	나 성 린
이 상 일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노 영 민	노 철 래	도 중 환	류 성 결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류 지 영	문 대 성	문 병 호	문 재 인
이 윤 석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배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춘 석	이 학 재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윤 옥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박 인 숙	박 창 식	박 흥 근	배 덕 광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해 철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정 용 기	정 의 화	정 진 후	정 호 준	신 경 립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신의진	신 정 훈	심 윤 조	심 재 권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민 희	안 민 석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최 봉 흥	최 재 천	하 태 경	한 기 호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성 엽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황 진 하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반대 의원(3인)

정 청 래 진 성 준 홍 종 학

기권 의원(11인)

강 동 원	김 기 식	김 상 희	배 재 정
은 수 미	이 종 결	이 학 영	전 순 옥
진 선 미	추 미 애	홍 영 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강석훈 의원 외 47인 발의)

투표 의원(269인)

찬성 의원(223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경 원	나 성 린
노 영 민	노 철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박 흥 근	배 덕 광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의진	신 정 훈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회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의 화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주 흥	황 진 하	
반대 의원(19인)			
강 동 원	강 창 일	權 垠 希	김 기 식
김 미 희	김 재 연	김 제 남	박 원 석
서 기 호	심 상 정	오 병 윤	이 상 규
이 종 결	이 학 영	전 순 옥	정 진 후
정 청 래	주 승 용	홍 종 학	
기권 의원(27인)			
강 기 정	김 민 기	김 성 주	김 우 남
김 태 년	김 현 미	남 인 순	노 웅 래
박 민 수	박 주 선	박 혜 자	배 재 정
송 호 창	신 경 민	신 학 용	안 철 수
우 원 식	유 대 운	은 수 미	이 미 경
이 언 주	이 인 영	전 정 희	최 재 천
추 미 애	홍 의 락	홍 익 표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덕 광	배 재 정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의 화	정 진 후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재 천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주 흥	황 진 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강석훈 의원 외 47인 발의)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54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동 원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權 垠 希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회 국	김 회 정
나 경 원	나 성 립	남 인 순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회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흥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수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반대 의원(4인)			
김 기 식	김 제 남	정 청 래	홍 종 학
기권 의원(10인)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영 록	김 재 원
김 태 년	신 정 훈	은 수 미	이 종 결

전 순 옥 추 미 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윤영석

의원 외 46인 발의)

투표 의원(276인)

찬성 의원(177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경 원	나 성 립
노 철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성 호	박 완 주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창 식	배 덕 광	백 군 기	백 재 현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규 백	안 덕 수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일 호
유 재 중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진 정 희	정 갑 윤	정 두 언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의 화	정 회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해 진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영	최 경 환	최 봉 홍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반대 의원(86인)

강 기 정	강 동 원	權 垠 希	김 기 식
김 기 준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윤 덕
김 재 연	김 제 남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현 미	남 인 순	노 영 민	도 종 환
문 재 인	박 기 춘	박 민 수	박 병 석
박 수 현	박 원 석	배 재 정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설 훈	송 호 창
신 경 민	신 정 훈	심 상 정	심 재 권
안 민 석	안 철 수	양 승 조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은 혜	윤 관 석
윤 후 덕	은 수 미	이 미 경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언 주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인 영	이 재 오	이 중 결	이 찬 열
이 춘 석	이 학 영	인 재 근	임 수 경
전 순 옥	전 해 철	정 세 균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조 경 태	조 정 식
주 승 용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재 천	추 미 애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종 학		

기권 의원(13인)

김 현	노 응 래	문 병 호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주 선	박 혜 자
박 흥 근	유 승 희	유 인 태	이 개 호
최 민 희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명수 의원 외 46인 발의)

투표 의원(278인)

찬성 의원(172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權 垠 希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영우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정립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성호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일호	유재중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이강후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하진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수성	정용기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영	최경환	최봉홍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91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김기식
김기준	김미희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승남	김영록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우남	김윤덕
김재연	김제남	김태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문재인
민홍철	박기춘	박민수	박병석

박수현	박원석	박주선	배재정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정훈	심상정
심재권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혜영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은수미	이미경	이상규	이상민
이언주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재오	이종걸	이찬열	이학영
이해찬	인재근	임수경	전순옥
진정희	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진성준
최규성	최재천	추미애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기관 의원(15인)

김춘진	김현	노웅래	문병호
박광온	박남춘	박혜자	박홍근
신학용	유승희	유인태	이개호
임내현	정의화	최민희	

(오병윤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반대 의원 91인, 기관 의원 15인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동철 의원 등 30인 발의)**

투표 의원(276인)

찬성 의원(267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옹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립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욱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해찬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순옥 정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선교 함진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2인)

강석호 이한구

기권 의원(7인)

김기식 김학용 심재철 정청래
 한기호 홍문종 홍문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서영교 의원 등 40인 발의)

투표 의원(275인)

찬성 의원(25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태환 김태흠 김태원 김태호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옹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 윤 조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은 수 미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균 현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원 옥	이 인 영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결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한 성	이 해 찬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순 옥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호 영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재 천	추 미 애	하 태 경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익 표	홍 종 학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반대 의원(10인)

권 성 동	김 무 성	김 용 남	김 진 태
김 학 용	박 덕 흠	정 갑 윤	주 영 순
한 기 호	홍 문 중		

기권 의원(15인)

강 석 훈	김 기 식	김 종 훈	류 지 영
민 병 주	신 경 립	신 동 우	심 재 철
심 학 봉	유 재 중	이 노 근	이 완 구
이 채 익	이 한 구	홍 일 표	

발의)

투표 의원(276인)

찬성 의원(247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기 준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명 연	김 무 성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익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연
김 재 원	김 정 룡	김 정 훈	김 제 남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김 희 정	나 경 원	나 성 립	노 영 민
노 웅 래	노 철 래	도 종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병 호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회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흥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계 룡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철	심 학 봉	안 덕 수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흥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재 중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균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이 상 민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김세연 의원 외 29인)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제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헌재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정의화	정진후	정호준	정희수	박창식	박혜자	배덕광	백군기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최원식	최재천	하태경	한기호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한선교	함진규	홍문중	홍문표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윤조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반대 의원(5인)

권垠希	김영록	이종걸	추미애
홍종학			

기권 의원(24인)

강기정	강동원	김기식	김상희
김윤덕	김현미	남인순	박기춘
박민수	배덕광	백재현	신성범
신정훈	심재권	안규백	오병윤
유일호	은수미	이인영	이한구
전순옥	정청래	조경태	진성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 발의)

투표 의원(273인)

찬성 의원(225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태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윤조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이헌승	이헌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28인)			
강동원	김기식	김기준	김미희
김상희	김용익	김우남	김재연
김제남	박민수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신정훈	심상정	오병윤
우원식	유은혜	은수미	이노근
이윤석	이인영	전순옥	정진후
정청래	주승용	진선미	홍종학
기권 의원(20인)			
김민기	김성주	김영록	김종훈
김태년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박홍근	설훈	심재권	오영식
유승희	이연주	이원욱	이학영
전해철	정병국	홍영표	홍익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홍문표 의원 등 3인 외 84인 발의)

투표 의원(268인)

찬성 의원(22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영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태	김우남	김장실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배덕광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제세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주홍

반대 의원(16인)

강동원	김기식	김용익	김재연
김제남	박민수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오병윤	우원식	이노근
이윤석	정진후	정청래	홍종학

기권 의원(23인)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김성주
김태년	노웅래	도종환	박홍근
배재정	설훈	신정훈	오영식
원혜영	유승희	유은혜	은수미
이연주	이원욱	이인영	전순옥

전 해 철 진 선 미 홍 익 표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투표 의원(264인)

찬성 의원(229인)

강 기 윤	강 기 정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권 垠 希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용 태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흙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미	김 현 숙	김 회 선
김 희 국	나 경 원	노 철 래	도 중 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두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기 춘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덕 흙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박 홍 근	배 덕 광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부 좌 현	서 기 호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설 훈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송 호 창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기 남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상 정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철 수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영 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석 현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이 인 제	이 자 스 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중 훈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장 병 완	장 윤 석
전 병 현	전 정 희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호 준	정 희 수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영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흥
최 원 식	최 재 천	하 태 경	한 기 호
한 선 교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흥
황 진 하			

반대 의원(11인)

강 동 원	김 기 식	김 미 희	김 용 익
김 재 연	노 영 민	박 민 수	배 재 정
오 병 윤	진 성 준	홍 익 표	

기권 의원(24인)

김 기 준	김 민 기	김 상 희	김 제 남
남 인 순	노 용 래	박 원 석	신 계 룡
신 정 훈	안 덕 수	우 원 식	유 승 희
유 은 혜	은 수 미	이 언 주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인 영	이 학 영	전 순 옥
정 진 후	정 청 래	진 선 미	추 미 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227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권 垠 希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명 연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성 주	김 성 찬
김 성 태	김 세 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우 남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경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정 훈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춘 진
김 태 년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노영민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미경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호준	정희수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18인)

김민기	김용익	김제남	노용래
박덕흠	박원석	서기호	심상정
양승조	오병운	유대운	은수미
이인영	임수경	정진후	정청래
주승용	홍의락		

기권 의원(17인)

강기정	강동원	김기식	김기준
김미희	김재연	남인순	박남춘
배재정	유승희	이언주	이원욱
이학영	전순옥	조정태	진선미
최재천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4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우남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국	나경원
남인순	노영민	노용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성범

신 의 진	신 정 훈	신 학 용	심 상 정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민
심 재 권	심 재 철	안 덕 수	안 민 석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세 연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승 조	양 창 영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여 상 규	염 동 열	오 병 윤	오 영 식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정 록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원 식	우 윤 근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김 태 원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흡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민	유 승 우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인 태	김 희 국	김 희 정	나 경 원	나 성 린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노 웅 래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만 우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운	박 남 춘
이 명 수	이 미 경	이 병 석	이 상 규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명 재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윤 옥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이 원 욱	이 윤 석	이 인 영	이 인 제	배 덕 광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이 중 배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춘 석	신 경 민	신 계 룡	신 동 우	신 성 범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임 수 경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장 병 완	장 윤 석	전 순 욱	전 정 희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염 동 열	오 제 세	우 윤 근	원 유 철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성 호	정 세 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홍	유 승 민
정 수 성	정 용 기	정 우 택	정 의 화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정 회 수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재 옥
조 경 태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군 현
조 해 진	주 승 용	주 영 순	주 호 영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진 선 미	진 성 준	진 영	최 경 환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최 규 성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원 식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운 룡
추 미 애	하 태 경	한 기 호	함 진 규	이 원 욱	이 윤 석	이자스민	이 장 우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의 락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중 배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이 중 진	이 중 훈	이 주 영	이 진 복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주 흥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황 진 하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현 승	이 현 재

기권 의원(3인)

신 동 우 이 진 복 이 학 영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189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일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권 垠 希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반대 의원(31인)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용 남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흡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희 정	나 경 원	나 성 린
류 성 결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홍 철	박 광 운	박 남 춘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주 선	박 창 식	박 혜 자
백 군 기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계 룡	신 동 우	신 성 범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우 윤 근	우 윤 근	원 유 철
유 기 홍	유 기 홍	유 승 민
유 인 태	유 인 태	유 일 호
윤 상 현	윤 상 현	윤 재 옥
이 강 후	이 강 후	이 군 현
이 명 수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언 주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우 현	이 우 현	이 운 룡
이자스민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정 현	이 정 현	이 중 배
이 주 영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철 우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현 승	이 현 승	이 현 재
장 병 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해 철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병 국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의 화	정 회 수
조 정 식	조 정 식	조 해 진
최 경 환	최 경 환	최 봉 홍
최 원 식	최 원 식	홍 문 종
함 진 규	함 진 규	홍 지 만
홍 영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일 표	홍 일 표	황 인 자
황 영 철	황 영 철	황 우 여

강 동 원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승 남
김 영 록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재 연
김 제 남	김 춘 진	박 민 수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서 기 호	설 훈
신 기 남	신 정 훈	심 상 정	양 승 조
오 병 윤	우 상 호	우 원 식	이 개 호
이 상 규	임 수 경	정 진 후	정 청 래
진 성 준	최 규 성	황 주 흥	
기권 의원(29인)			
강 기 정	김 기 식	김 기 준	김 성 주
김 태 년	남 인 순	노 영 민	도 종 환
민 병 두	박 홍 근	배 재 정	부 좌 현
오 영 식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희
유 은 혜	이 인 영	이 인 제	이 학 영
진 순 옥	정 성 호	정 호 준	조 경 태
주 승 용	진 선 미	최 원 식	추 미 애
홍 익 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188인)			
강 기 윤	강 길 부	강 석 호	강 석 훈
강 은 희	강 창 희	경 대 수	권 성 동
권 은 희	權 垠 希	길 정 우	김 관 영
김 광 립	김 기 선	김 도 읍	김 동 완
김 동 철	김 무 성	김 상 민	김 상 훈
김 성 곤	김 성 찬	김 세 연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환	김 을 동	김 장 실
김 재 원	김 정 록	김 제 식	김 종 태
김 종 훈	김 진 태	김 태 호	김 태 환
김 태 흙	김 학 용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김 회 국	김 회 정	나 경 원
나 성 린	노 웅 래	류 성 걸	류 지 영
문 대 성	문 재 인	문 정 립	문 희 상
민 병 주	민 현 주	민 홍 철	박 광 온
박 남 춘	박 대 동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민 식	박 병 석	박 성 호
박 윤 옥	박 인 숙	박 주 선	박 창 식
배 덕 광	백 재 현	변 재 일	서 상 기
서 영 교	서 용 교	서 청 원	손 인 춘
송 광 호	송 영 근	신 경 립	신 경 민
신 계 룬	신 동 우	신 성 범	신 의 진
신 학 용	심 윤 조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덕 수	안 민 석	안 홍 준

안 효 대	양 창 영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윤 근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유 기 흥	유 승 민
유 승 우	유 의 동	유 인 태	유 일 호
윤 관 석	윤 명 희	윤 상 현	윤 영 석
윤 재 옥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강 후
이 개 호	이 군 현	이 노 근	이 만 우
이 명 수	이 병 석	이 상 일	이 석 현
이 언 주	이에리사	이 완 구	이 완 영
이 우 현	이 윤 룡	이 원 옥	이 윤 석
이 인 제	이자스민	이 장 우	이 재 영
이 재 오	이 정 현	이 종 배	이 종 진
이 종 훈	이 주 영	이 진 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우	이 학 재	이 한 구
이 한 성	이 헌 승	이 현 재	인 재 근
임 내 현	장 병 완	장 윤 석	전 하 진
전 해 철	정 갑 윤	정 문 현	정 미 경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수 성	정 우 택
정 의 화	정 희 수	조 명 철	조 원 진
조 정 식	조 해 진	주 영 순	주 호 영
진 영	최 경 환	최 봉 흥	하 태 경
한 기 호	함 진 규	홍 문 종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일 표	홍 지 만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우 여	황 인 자	황 진 하
반대 의원(29인)			
강 동 원	강 창 일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영 록	김 용 익	김 우 남	김 재 연
김 제 남	김 춘 진	박 민 수	박 수 현
박 완 주	박 원 석	서 기 호	설 훈
신 기 남	신 정 훈	심 상 정	양 승 조
오 병 윤	우 원 식	은 수 미	이 상 규
정 진 후	정 청 래	진 성 준	최 규 성
황 주 흥			
기권 의원(32인)			
강 기 정	김 기 식	김 기 준	김 성 주
김 승 남	김 태 년	남 인 순	노 영 민
도 종 환	민 병 두	박 혜 자	박 홍 근
배 재 정	백 군 기	부 좌 현	오 영 식
유 대 운	유 성 엽	유 승 희	유 은 혜
이 인 영	이 학 영	진 순 옥	진 정 희
정 성 호	정 호 준	조 경 태	주 승 용
진 선 미	최 원 식	추 미 애	홍 익 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18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관영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전순옥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하태경
한기호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14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김기식
김미희	김재연	김제남	박민수
박원석	오병윤	이상규	이학영
정진후	정청래		

기권 의원(19인)

김광림	김기준	김성곤	김성주
김태년	김태흠	남인순	박수현
배재정	서기호	오제세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이석현	임수경
정성호	진선미	추미애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49인)

찬성 의원(214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반대 의원(17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김기식
김미희	김재연	김제남	박민수
송호창	신정훈	오병윤	우상호
이상규	이학영	임수경	정진후
최원식			

기권 의원(18인)

김기준	김성주	김태년	남인순
-----	-----	-----	-----

박수현	배재정	서기호	심상정
오제세	우원식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전순옥	정호준	진선미
최민희	홍익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45인)

찬성 의원(199인)

강기윤	강길부	강석호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權垠希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태	김중훈
김진태	김태원	김태호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웅래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우상호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일호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석현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장병완 장윤석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문헌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28인)

강기정 강동원 강창일 김기식
 김미희 김재연 김제남 노영민
 박민수 박완주 박원석 배재정
 서기호 신학용 심상정 오병윤
 오영식 윤관석 이상규 이언주
 이원욱 이학영 임수경 정진후
 진성준 최원식 홍영표 홍익표

기권 의원(18인)

김기준 김성주 김영록 김을동
 김춘진 김태년 남인순 도종환
 부좌현 안민석 오제세 우원식
 유성엽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전순욱 진선미

(윤후덕 의원 착오로 홍의락 의원석 표결기 조작, 윤관석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실제 투표 의원 245인, 찬성 의원 199인, 반대 의원 28인, 기권 의원 18인임)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15인)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희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원 김정록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태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노웅래 류성결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박남춘 박대동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영식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은혜 유의동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찬열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한성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임내현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전정희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정문헌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세균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청래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조정식
 조경태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조해진 주영 최규성 최민희
 진성준 진영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최봉홍 함진규 홍문종 홍익표
 한기호 함진규 홍철호 황영철
 홍일표 홍지만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황진하

반대 의원(12인)

강기정	강창일	김기식	김미희
김재연	박민수	서기호	오병윤
이상규	이학영	정진후	조원진

기권 의원(16인)

김기준	김제남	남인순	노영민
도종환	박원석	신정훈	안민석
오제세	유승희	유인태	은수미
전순옥	진선미	홍문표	홍영표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병석
이상규	이상일	이연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수경	장윤석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진하	

(배덕광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실제 찬성 의원 231인, 기권 의원 없음)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31인)

찬성 의원(231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희국
김희정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33인)

찬성 의원(224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관영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성곤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익	김을동
김장실	김재연	김정록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학용	김한표	김현	김현숙

김희국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옹래	성종환	류지영	문대성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강후	이개호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상규	이상일	이언주
이에리사	이완구	이우현	이운룡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정현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학영	이한성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정갑윤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민희	최원식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함진규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진하

기권 의원(9인)

김광림	김용남	김재원	류성걸
-----	-----	-----	-----

심재철	안덕수	원혜영	이진복
최봉홍			

○출석 의원(290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강창희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垠希	길정우	김관영	김광림
김광진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윤덕	김을동	김장실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국	김희정
나경원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옹래	노철래	도종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기춘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창식	박혜자	박홍근
배덕광	배재정	백균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서상기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우	유승희	유은혜	김종훈	김진태	김춘진	김태년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태흠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국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김현미	김현숙	김희선	김희철
이강후	이개호	이균현	이노근	나성린	노영민	노용래	노철래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도중환	류성걸	류지영	문병호
이병석	이상규	이상민	이상일	문재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에리사	민병주	민현주	민홍철	박광운
이완구	이완영	이우현	이운룡	박남춘	박대동	박대출	박덕흠
이원욱	이윤석	이인영	이인제	박맹우	박명재	박민수	박민식
이자스민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박범계	박병석	박성호	박완주
이정현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박원석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박창식	박홍근	배재정	백균기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기호
이학재	이한구	이한성	이해찬	서상기	서용교	설훈	손인춘
이현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송광호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임수경	장병완	장윤석	전병헌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동우
전순옥	전정희	전하진	전해철	신성범	신의진	신정훈	신학용
정갑윤	정두언	정문헌	정미경	심상정	심윤조	심재권	심재철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심학봉	안규백	안덕수	안민석
정용기	정우택	정의화	정진후	안철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정청래	정호준	정희수	조경태	양창영	여상규	염동열	오병윤
조명철	조원진	조정식	조해진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주승용	주영순	주호영	진선미	우윤근	원유철	유기준	유기홍
진성준	진영	최경환	최규성	유대운	유성엽	유승민	유승희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원식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하태경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한기호	한선교	한정애	함진규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이강후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홍철호	황영철	황우여	황인자	이상규	이언주	이상일	이상직
황주홍	황진하			이석현	이완구	이에리사	이완구

○개의 시 재석 의원(249인)

강기윤	강기정	강길부	강동원
강석호	강석훈	강은희	강창일
경대수	권성동	권은희	권영희
김관영	김광림	김기선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미희	김민기	김상민
김상훈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	김세연	김승남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영환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우남	김을동
김재경	김재연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남	김제식	김종태

진 영 최 동 익 최 민 희 최 봉 홍
 최 재 천 추 미 애 한 기 호 한 선 교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중 홍 문 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일 표 홍 중 학
 홍 철 호 황 영 철 황 인 자 황 주 홍
 황 진 하

○산회 시 재석 의원(46인)

강 창 일 길 정 우 김 미 희 김 민 기
 김 성 곤 김 성 주 김 성 태 김 용 익
 김 재 연 김 제 남 김 춘 진 김 한 표
 김 현 김 현 숙 도 종 환 박 광 온
 박 민 수 박 수 현 박 인 숙 박 홍 근
 배 재 정 서 영 교 신 경 민 심 상 정
 오 병 윤 유 성 엽 유 은 혜 윤 명 희
 윤 후 덕 은 수 미 이 노 근 이 상 규
 이 진 복 이 학 영 임 수 경 정 의 화
 정 진 후 정 청 래 정 호 준 진 선 미
 진 성 준 최 규 성 최 민 희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청가 의원(4인)

김 경 협 박 영 선 이 이 재 한 명 숙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박 형 준
 의 사 국 장 장 대 섭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정 홍 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 경 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황 우 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통 일 부 장 관 류 길 재
 법 무 부 장 관 황 교 안
 국 방 부 장 관 한 민 구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정 중 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 중 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동 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 상 직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문 형 표
 환 경 부 장 관 윤 성 규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기 권
 여 성 가 족 부 장 관 김 희 정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서 승 환
 해 양 수 산 부 장 관 이 주 영

○출석 정부위원

외 교 부 제 1 차 관 조 태 용

국 민 안 전 처 차 관 이 성 호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정병국	새누리당	2014. 11. 10
국민안전혁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2014. 11. 17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황영철	새누리당	2014. 11. 10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안전혁신	김태원	새누리당	2014. 11. 17
	노용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안 자동부의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14건 2014. 9. 22 정부 제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7. 30 정부 제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0. 10 정부 제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세연 의원 대표발의)

(2014. 2. 6 김세연·도종환·김태원·박창식·김광진·민병주·신경민·서영교·박인숙·정진후·정갑윤·하태경·김춘진·이진복·김무성·박민식·김제남·박기춘·이운룡·이낙연·윤관석·이석현·한명숙·이만우·손인춘·김장실·강은희·문대성·유기홍·유은혜·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17건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됨

○의안 제출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유승희·최동익·정성호·김광진·오제세·이개호·이미경·임수경·추미애·박남춘·김우남 의원 발의)

11월 10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홍영표·김영록·심상정·이윤석·김경협·이목희·안규백·이인영·전순옥·조정식·장하나 의원 발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7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이명수·김기선·박윤옥·정희수·이에리사·문정림·이종진·김을동·김제식·김태원·이노근 의원 발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김우남·주승용·김영록·최규성·부좌현·홍문표·강동원·김춘진·강기정·김종태 의원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4. 11. 7 정부 제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김진태·강석훈·권성동·한기호·이한성·김희선·조명철·이강후·강석호·이이재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이명수·정희수·황인자·손인춘·한기호·김한표·김을동·박윤옥·박덕흠·신경림·문정림 의원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이명수·정희수·황인자·손인춘·한기호·김한표·김을동·박윤옥·박덕흠·신경림·문정림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이명수·정희수·황인자·손인춘·한기호·김한표·김을동·박윤옥·박덕흠·

신경림·문정림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이명수·정희수·황인자·손인춘·한기호·김한표·김을동·박윤옥·박덕흠·신경림·문정림 의원 발의)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이상일·송영근·김을동·김장실·윤재옥·유일호·주영순·주호영·신성범·김희선·이한성·길정우·이에리사·이종훈·유재중·염동열·안홍준·신의진·강은희·류지영 의원 발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7 정부 제출)

이상 6건 11월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이명수·황인자·손인춘·김한표·김을동·문정림·정희수·정문현·박윤옥·박덕흠 의원 발의)

11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김우남·주승용·김영록·최규성·부좌현·홍문표·강동원·김춘진·강기정·김종태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김장실·주호영·서상기·이상일·황인자·이완영·박인숙·이만우·안홍준·송영근·손인춘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진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진영·윤영석·정용기·강창일·유대운·박남춘·김재연·김장실·박인숙·문정림·김태원·황인자·정병국·김을동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김우남·주승용·김영록·최규성·부좌현·홍문표·강동원·김춘진·강기정·김종태 의원 발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7 정부 제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7 김우남 · 주승용 · 김영록 · 최규성 · 부좌현 · 홍문표 · 강동원 · 김춘진 · 강기정 · 김종태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기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 2014. 11. 7 정부 제출)

이상 6건 11월 1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정희수 · 이명수 · 송영근 · 손인춘 · 김상훈 · 이만우 · 홍철호 · 박명재 · 류지영 · 김태환 의원 발의)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7 정희수 · 이완영 · 이명수 · 박대동 · 송영근 · 김상훈 · 홍철호 · 박명재 · 김태환 · 서용교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한명숙 · 신기남 · 강기정 · 김기준 · 은수미 · 최동익 · 신계륜 · 김경협 · 장하나 · 이미경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강석훈 · 홍지만 · 송영근 · 김희선 · 김광립 · 이상일 · 송광호 · 박성호 · 김정록 · 박명재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정희수 · 이완영 · 이명수 · 박대동 · 송영근 · 김상훈 · 홍철호 · 박명재 · 김태환 · 서용교 의원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명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한명숙 · 김경협 · 김광진 · 박주선 · 박홍근 · 배재정 · 인재근 · 장하나 · 최동익 · 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0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정희수 · 이한성 · 이노근 · 송영근 · 김상훈 · 이명수 · 홍철호 · 김태환 · 서용교 · 이자스민 의원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7 박성호 · 김태원 · 박창식 · 강기윤 · 홍지만 · 황인자 · 유승우 · 최봉홍 · 강석훈 · 박명재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박기춘 · 박수현 · 정성호 · 김성주 · 권은희 · 이윤석 · 홍문표 · 김성태 · 함진규 · 정용기 · 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에너지복지법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이찬열 · 김성곤 · 변재일 · 박홍근 · 안민석 · 황주홍 · 안규백 · 김현 · 윤호중 · 김광진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김한표 · 김태원 · 김명연 · 김정록 · 이명수 · 홍지만 · 류지영 · 민현주 · 윤명희 · 박인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7 김성찬 · 송영근 · 홍철호 · 김태원 · 주영순 · 배덕광 · 이현재 · 박대출 · 박맹우 · 박윤옥 · 김기선 의원 발의)

11월 10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윤재옥 · 한선교 · 유승민 · 박대출 · 이상일 · 유재중 · 이에리사 · 김상훈 · 염동열 · 김성태 의원 발의)

11월 1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광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송광호 · 박덕흠 · 경대수 · 배덕광 · 이종진 · 김기선 · 정용기 · 유일호 · 이상규 · 송영근 · 이인제 · 김태흠 · 염동열 · 김상훈 · 강기윤 · 박창식 · 이이재 · 이장우 · 김종태 · 이종배 의원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윤상현·김상민·김성찬·김용태·김종태·문정림·안덕수·윤명희·이완영·이이재·이한성·이현재·홍철호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윤상현·김상민·김성찬·김용태·김종태·문정림·안덕수·윤명희·이완영·이이재·이한성·이현재·홍철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심재철·이만우·박덕흠·박명재·박맹우·김광림·정희수·강석훈·김태원·안덕수·경대수·김명연·문정림·김제식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0 정부 제출)

이상 2건 11월 1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유의동·원유철·류지영·이운룡·신동우·김중훈·김용남·김상민·김을동·이자스민 의원 발의)

11월 1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주승용·변재일·김우남·이윤석·김영환·강기정·강창일·최규성·김성곤·김광진 의원 발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이찬열·김윤덕·백재현·김성곤·변재일·박홍근·윤호중·김광진·신경민·김태년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이원욱·김광진·노영민·진성준·이연주·원혜영·박혜자·김민기·박병석·추미애·황주홍·이미경·최민희·오제세·김성곤·박홍근·오영식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황주홍·김영환·주승용·문병호·신학용·김승남·유성엽·김우남·김성곤·이종걸 의원 발의)

11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0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이원욱·설훈·박홍근·노영민·인재근·김기준·김광진·박남춘·박광은·오영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14. 11. 10 우윤근·이연주·김성곤·김광진·정성호·남인순·유성엽·김재윤·이목희·박민수·백재현·신성범·민홍철·김재경·황주홍·박남춘·김용태·강기정·추미애·이재오·진영·김동철·김제남·안효대·부좌현·전해철·김관영·오영식·문병호·윤후덕·유인태·원혜영 의원 발의)

11월 1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이찬열·김윤덕·백재현·김성곤·변재일·박홍근·윤호중·김광진·신경민·김태년 의원 발의)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이원욱·이미경·이개호·정성호·최민희·진성준·이강후·김성곤·오제세·박홍근·오영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이찬열·김윤덕·백재현·변재일·박홍근·황주홍·김광진·신경민·김태년·조정식 의원 발의)

11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0 김춘진·박범계·배재정·김윤덕·김영록·박민수·이찬열·김경협·김우남·홍문표 의원 발의)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윤상현·염동열·문대성·조원진·정용기·노철래·원유철·안홍준·안덕수·김종태·홍문표·박덕흠·이우현·민병주 의원

발의)

교정공제회법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임내현·박지원·김성곤·우윤근·전해철·이한성·홍일표·서영교·노철래·김동철 의원 발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박명재·이강후·이한성·이종진·박윤옥·홍철호·이상규·김미희·김기선·황진하·김광림·강길부·김태원·김상훈 의원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박남춘·임수경·추미애·원혜영·김광진·김성곤·김현·이목희·장하나·정진후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장윤석·김세연·조명철·정갑윤·경대수·유승우·김동완·손인춘·문정림·주영순·김광림·조해진·이운룡·김명연·정의화·김춘진·이만우·박명재·김승남·신동우·이우현·김태호·조현룡·이에리사·정성호·정수성·심학봉·김기선·김태원·김상훈·백재현·정우택·심윤조·이철우·김성태·강기정·김장실·이강후·우윤근·김도읍·송영근·민병주·강동원·김재경·김상민·박남춘·박상은·정희수·안홍준·강기윤·김태환·박인숙·안효대·이한구·전하진·권은희·강석훈·김현숙·황인자·김영주·김희정·이인제·김종태·강석호·김정록·박병석·서영교·황진하·민현주·송광호·윤관석·임내현·조경태·윤명희·이재영·함진규·이진복·김종훈·박대동·김희국·노철래·박윤옥·이군현·이병석·김재원·박성호·정문헌·이상일·김을동·신경림·신의진·이종진·이명수·윤재옥·심재철·이완영·이채익·나성린·이종훈·김태흠·유기준·서용교·류지영·김영록·박창식·최민희·김재윤·박혜자·백군기·홍지만·박민식·유성엽·김용태·오제세·서상기·이윤석·정세균·원유철·김한표·신학용·이한성·신성범·이이재·이노근·이현승·김성찬·염동열·신계륜·길정우·김학용·강은희·하태경·정진후·민홍철·김영우·이자스민·최규성·전해철·조정식·노응래·우원식·장병완·안민석·부좌현·

한기호·한선교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사회적경제기본법안(박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박원석·장하나·서기호·심상정·김제남·정진후·김현미·최재성·최민희·양승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나성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나성린·김광림·홍문종·이만우·이현재·류지영·권성동·김도읍·이우현·김희선·홍철호·강석호·박명재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김한표·김태원·김정록·이명수·홍지만·류지영·민현주·윤명희·박인숙·권성동 의원 발의)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박명재·이강후·이한성·이종진·박윤옥·홍철호·이상규·김미희·김기선·황진하·김광림·강길부·김태원·김상훈 의원 발의)

공공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이찬열·김윤덕·백재현·김성곤·변재일·윤호중·김광진·김태년·안민석·박광온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주호영·김희국·김종태·이에리사·서상기·김장실·홍지만·정두언·김광림·홍철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2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박명재·이강후·이한성·이종진·박윤옥·홍철호·이상규·김미희·김기선·황진하·김광림·강길부·김태원·김상훈 의원 발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전하진·강석호·강은희·여상규·정병국·정수성·이채익·이강후·홍지만·김한표·강창희·이진복·신성범·문정림·김명연·김제식·정문헌·이현재·김상훈·이이재·민현주·김상민 의원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1 정부 제출)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김동철·임내현·김세연·강기정·장병완·강은희·김상훈·전하진·박주선·오영식·문재인·이철우 의원 발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김동철·박남춘·전정희·권은희·부좌현·김태환·조경태·박주선·홍지만·김상훈·전하진·이채익·정수성·이진복·여상규·박성호·심학봉·이강후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2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박명재·이강후·이한성·이종진·박윤옥·홍철호·이상규·김미희·김기선·황진하·김광림·강길부·김태원·김상훈 의원 발의)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박명재·이강후·이한성·이종진·박윤옥·홍철호·이상규·김미희·김기선·황진하·김광림·강길부·김태원·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박명재·이강후·이한성·이종진·박윤옥·홍철호·이상규·김미희·김기선·황진하·김광림·강길부·김태원·김상훈 의원 발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배덕광·김성찬·이종배·김용남·최봉홍·박윤옥·이종진·윤명희·조명철·송영근 의원 발의)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주호영·정문현·안덕수·김희국·김도읍·이에리사·서상기·김장실·이상일·홍지만·정두언·홍철호·김광림·김제식·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2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박명재·이강후·이한성·이종진·

박윤옥·홍철호·이상규·김미희·김기선·황진하·김광림·강길부·김태원·김상훈 의원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부좌현·이개호·박남춘·김성곤·김우남·정성호·김광진·정청래·오제세·인재근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손인춘·윤명희·송영근·이강후·이진복·장윤석·황인자·정희수·심윤조·김장실 의원 발의)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손인춘·윤명희·송영근·이강후·이진복·장윤석·황인자·정희수·심윤조·김장실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희정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김희정·나성린·서상기·홍철호·김장실·주호영·배덕광·양승조·강은희·류지영·황인자·이종훈·윤상현·박민식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박남춘·홍종학·윤후덕·장하나·박민수·윤관석·유대운·남인순·유성엽·김성곤·서영교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2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김태원·이만우·정성호·김한표·강기윤·김성곤·배덕광·김태환·강석호·박성호 의원 발의)

11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1 정부 제출)

11월 1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2015년 세계 빛의 해 지원에 관한 결의안

(2014. 11. 11 민병주·강기윤·강길부·강창일·강창희·권은희·김기선·김상훈·김재경·

김태원 · 김태흠 · 김학용 · 김현숙 · 남인순 · 류지영 · 문병호 · 문재인 · 민현주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지원 · 박창식 · 배덕광 · 서영교 · 손인춘 · 송광호 · 신경림 · 심윤조 · 심학봉 · 염동열 · 오제세 · 이상호 · 원혜영 · 유기준 · 유성엽 · 유승민 · 유승희 · 유일호 · 윤영석 · 이개호 · 이미경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윤석 · 이인영 · 이장우 · 이재영 · 인재근 · 임수경 · 장병완 · 장윤석 · 전병헌 · 전하진 · 정호준 · 조해진 · 최동익 · 최민희 · 최원식 · 한명숙 · 홍문종 · 홍의락 · 홍지만 · 황진하 의원 발의)

11월 12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1 주호영 · 정병국 · 주영순 · 유승민 · 김종훈 · 정문헌 · 함진규 · 정진후 · 유기홍 · 정두언 · 이종배 · 안규백 · 이개호 · 박명재 · 경대수 · 윤후덕 · 홍일표 · 김무성 · 장윤석 · 김상훈 · 김성찬 · 황주홍 · 길정우 · 한기호 · 김재원 · 김광진 · 이만우 · 김정록 · 이춘석 · 김장실 · 이강후 · 배덕광 · 김동완 · 김태환 · 박인숙 · 이완영 · 백재현 · 박혜자 · 염동열 · 박덕흠 · 송영근 · 이상일 · 강석훈 · 강석호 · 윤명희 · 문대성 · 김용남 · 김제식 · 유의동 · 강기정 · 홍지만 · 정성호 · 정용기 · 김성곤 · 이노근 · 권성동 · 김태원 · 이우현 · 전하진 · 이진복 · 정갑윤 의원 발의)

11월 12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심윤조 · 박인숙 · 류지영 · 김상훈 · 이에리사 · 김광림 · 이한성 · 손인춘 · 강석훈 · 유승민 · 김태환 · 김성곤 의원 발의)

방과후 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김춘진 · 강기정 · 박민수 · 김윤덕 · 박광온 · 이종배 · 김우남 · 김영록 · 이상직 · 김성곤 의원 발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이상일 · 우원식 · 김재경 · 심재철 · 김광림 · 박인숙 · 최봉홍 · 유승우 · 주영순 · 류지영 의원 발의)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피해자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박홍근 · 박병석 · 김상희 · 유인태 · 박혜자 · 이개호 · 김광진 · 정진후 · 배재정 · 유은혜 · 김기식 · 홍종학 · 남인순 · 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3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박광온 · 이목희 · 김광진 · 이춘석 · 신경민 · 김영록 · 이원욱 · 박지원 · 노영민 · 변재일 · 김성주 · 유기홍 · 오제세 · 최동익 · 인재근 · 양승조 · 강창일 · 정성호 · 이미경 · 김관영 · 윤호중 · 부좌현 · 박민수 · 박기춘 · 임수경 · 김성곤 · 한명숙 의원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정성호 · 박수현 · 부좌현 · 주승용 · 전병헌 · 이개호 · 박광온 · 최동익 · 최민희 · 오제세 · 박민수 · 박남춘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2 김성주 · 정진후 · 황주홍 · 변재일 · 박광온 · 윤관석 · 양승조 · 이목희 · 최동익 · 박완주 · 이학영 · 박홍근 · 박수현 · 배재정 · 김승남 · 이상호 · 이인영 · 김현미 · 홍종학 · 남인순 · 민병두 · 우원식 · 신경민 · 김경협 · 신기남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2 김성주 · 정진후 · 황주홍 · 변재일 · 박광온 · 윤관석 · 양승조 · 이목희 · 최동익 · 박완주 · 이학영 · 박홍근 · 박수현 · 배재정 · 김승남 · 이상호 · 이인영 · 김현미 · 홍종학 · 남인순 · 민병두 · 우원식 · 신경민 · 김경협 · 신기남 의원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김성주 · 정진후 · 황주홍 · 변재일 · 박광온 · 윤관석 · 양승조 · 이목희 · 최동익 · 박완주 · 이학영 · 박홍근 · 박수현 · 배재정 · 김승남 · 이상호 · 이인영 · 김현미 · 홍종학 · 남인순 · 민병두 · 우원식 · 신경민 · 김경협 · 신기남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김성주 · 정진후 · 황주홍 · 변재일 · 박광운 · 윤관석 · 양승조 · 이목희 · 최동익 · 박완주 · 이학영 · 박홍근 · 박수현 · 배재정 · 김승남 · 이상호 · 이인영 · 김현미 · 홍종학 · 남인순 · 민병두 · 우원식 · 신경민 · 김경협 · 신기남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2 신경민 · 심재권 · 부좌현 · 이개호 · 김현미 · 홍종학 · 김성곤 · 이종걸 · 박민수 · 박남춘 · 정청래 의원 발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김용익 · 양승조 · 이학영 · 박민수 · 이미경 · 장병완 · 강기정 · 윤호중 · 김상희 · 김성주 의원 발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유의동 · 홍철호 · 배덕광 · 류지영 · 이강후 · 양승조 · 손인춘 · 경대수 · 김용태 · 윤상현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윤후덕 · 추미애 · 박남춘 · 이개호 · 유기홍 · 김광진 · 배재정 · 이상규 · 백재현 · 안규백 · 부좌현 · 임수경 · 전정희 의원 발의)

11월 1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신경민 · 안민석 · 심재권 · 김현미 · 홍종학 · 오제세 · 최민희 · 박광운 · 김성곤 · 이찬열 · 이종걸 · 부좌현 · 배재정 · 이개호 · 한명숙 · 최동익 · 서기호 · 추미애 · 도종환 · 유기홍 · 박민수 · 박남춘 · 인재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김용익 · 양승조 · 박수현 · 김기식 · 최동익 · 이학영 · 박민수 · 이미경 · 장병완 · 강기정 · 윤호중 · 김상희 의원 발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강창일 · 노응래 · 박민수 · 박남춘 · 부좌현 · 이개호 · 이종걸 · 임수경 · 주승용 · 추미애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조경태 · 정수성 · 이만우 · 조명철 ·

정성호 · 황주홍 · 이한성 · 부좌현 · 박민수 · 김동철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2 정부 제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진선미 · 한명숙 · 이개호 · 은수미 · 이학영 · 박남춘 · 배재정 · 박민수 · 김현미 · 정청래 · 장하나 · 유기홍 · 이목희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신경민 · 한명숙 · 이개호 · 도종환 · 부좌현 · 심재권 · 최민희 · 김현미 · 홍종학 · 박광운 · 김성곤 · 이찬열 · 백재현 · 이종걸 · 박민수 · 박남춘 의원 발의)

**11월 1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오영식 · 김윤덕 · 이원욱 · 우원식 · 이인영 · 박홍근 · 노영민 · 홍의락 · 배재정 · 윤관석 · 백재현 · 전순옥 · 부좌현 · 김동철 · 전정희 의원 발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오영식 · 김윤덕 · 이원욱 · 우원식 · 이인영 · 박홍근 · 노영민 · 윤관석 · 백재현 · 전순옥 · 부좌현 · 김동철 · 전정희 의원 발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정성호 · 이찬열 · 변재일 · 박남춘 · 이미경 · 홍영표 · 한명숙 · 신기남 · 김경협 · 장하나 의원 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오영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오영식 · 김윤덕 · 이원욱 · 우원식 · 이인영 · 박홍근 · 노영민 · 홍의락 · 배재정 · 백재현 · 전순옥 · 부좌현 · 김동철 · 전정희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정성호 · 박수현 · 부좌현 · 주승용 · 전병헌 · 박광운 · 최동익 · 최민희 · 오제세 · 이찬열 · 박민수 · 박남춘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정성호 · 김광진 · 박수현 · 부좌현 ·

주승용 · 전병헌 · 박광은 · 최동익 · 최민희 · 오제세 · 이찬열 · 박민수 · 박남춘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2 정성호 · 박남춘 · 김태원 · 이찬열 · 변재일 · 양창영 · 홍영표 · 한명숙 · 신기남 · 김경협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송영근 · 권성동 · 정희수 · 김상훈 · 강석훈 · 주호영 · 정병국 · 김장실 · 김세연 · 이만우 · 김을동 · 배덕광 · 유의동 · 이현재 · 김성찬 · 이노근 · 조명철 · 손인춘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박민식 · 노철래 · 김진태 · 김성태 · 정병국 · 이만우 · 심윤조 · 장윤석 · 유승우 · 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송영근 · 권성동 · 정희수 · 김상훈 · 강석훈 · 주호영 · 정병국 · 김세연 · 이만우 · 김을동 · 유의동 · 배덕광 · 이현재 · 김성찬 · 이노근 · 김제식 · 조명철 · 손인춘 의원 발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이명수 · 김제식 · 김태원 · 김을동 · 정희수 · 박윤옥 · 김한표 · 황인자 · 문정림 · 윤명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주승용 · 변재일 · 김우남 · 이윤석 · 김영환 · 강기정 · 강창일 · 최규성 · 김성곤 · 김광진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정청래 · 한명숙 · 부좌현 · 박민수 · 김우남 · 이춘석 · 임내현 · 강기정 · 김광진 · 최민희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김춘진 · 김영록 · 이상직 · 김윤덕 · 박민수 · 최규성 · 김관영 · 유성엽 · 김성주 · 강동원 · 진선미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김우남 · 최규성 · 장하나 · 이개호 · 김영록 · 진성준 · 김춘진 · 전병헌 · 윤관석 · 유성엽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이철우 · 장윤석 · 김종태 · 김태환 · 이한성 · 홍철호 · 박명재 · 심학봉 · 강석호 · 정희수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이철우 · 장윤석 · 김종태 · 김태환 · 이윤석 · 이한성 · 홍철호 · 박명재 · 심학봉 · 강석호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김광립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김광립 · 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현숙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림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명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심학봉 · 안덕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승우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욱 · 이강후 · 이근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행정규제기본법 폐지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3 김광림 · 정희수 · 김현숙 · 이노근 ·
이재영 · 김재경 · 이주영 · 안효대 · 홍철호 ·
김정훈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부좌현 · 이개호 · 김성곤 · 박남춘 ·
김우남 · 정성호 · 김광진 · 정청래 · 백재현 ·
인재근 의원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임내현 · 김성곤 · 정청래 · 정성호 ·
김광진 · 이미경 · 박남춘 · 김동철 · 권은희 ·
이원욱 · 홍의락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이현재 · 김무성 · 이완구 · 김을동 ·
정갑윤 · 이인제 · 윤명희 · 이채익 · 정문헌 ·
황우여 · 이진복 · 박성호 · 신성범 · 한기호 ·
이주영 · 이강후 · 이재오 · 박윤옥 · 강은희 ·
이운룡 · 서용교 · 송영근 · 조원진 · 양창영 ·
이노근 · 홍일표 · 신경림 · 황인자 · 유일호 ·
한선교 · 박민식 · 여상규 · 경대수 · 홍문표 ·
김기선 · 문대성 · 이학재 · 이종진 · 류지영 ·
유재중 · 조명철 · 김성찬 · 서상기 · 홍철호 ·
길정우 · 강창희 · 홍지만 · 정병국 · 김희정 ·
김용태 · 황영철 · 노철래 · 유의동 · 이현승 ·
유승민 · 정미경 · 유기준 · 강길부 · 최봉홍 ·
김종태 · 류성걸 · 심윤조 · 원유철 · 권성동 ·
김상민 · 황진하 · 김정훈 · 이병석 · 박명우 ·
이종훈 · 이한성 · 정희수 · 이만우 · 정두연 ·
김광림 · 김진태 · 김태흠 · 김제식 · 이에리사 ·
문정림 · 정용기 · 정수성 · 김희국 · 김장실 ·
조해진 · 김명연 · 주호영 · 하태경 · 이상일 ·
안홍준 · 김재경 · 김동완 · 이우현 · 이명수 ·
박명재 · 심재철 · 이자스민 · 박덕흠 · 이종배 ·
김한표 · 윤상현 · 이한구 · 장윤석 · 신의진 ·
진영 · 이재영 · 김태호 · 홍문중 · 김성태 ·
심학봉 · 나성린 · 안효대 · 주영순 · 강기윤 ·
송광호 · 나경원 · 박대동 · 김정록 · 김용남 ·

이철우 · 배덕광 · 안덕수 · 김세연 · 윤재옥 ·
전하진 · 김상훈 · 박인숙 · 이이재 · 박창식 ·
김재원 · 윤영석 · 염동열 · 김희선 · 김태원 ·
이군현 · 이정현 · 김현숙 · 김도읍 · 민현주 ·
이장우 · 손인춘 · 박대출 · 권은희 · 김종훈 ·
김영우 · 김학용 · 서청원 · 김태환 · 정우택 ·
신동우 · 강석호 · 함진규 · 이완영 · 유승우 ·
강석훈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김춘진 · 황주홍 · 이종배 · 김우남 ·
김영록 · 김성곤 · 이상직 · 김윤덕 · 노영민 ·
김경협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3 이한성 · 정희수 · 김종태 · 유승민 ·
류지영 · 정수성 · 김상훈 · 김태원 · 안홍준 ·
조원진 의원 발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김춘진 · 김성곤 · 이상직 · 강기정 ·
김윤덕 · 박민수 · 이종배 · 김우남 · 김영록 ·
노영민 의원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김우남 · 최규성 · 장하나 · 이개호 ·
김영록 · 진성준 · 황주홍 · 김춘진 · 전병헌 ·
윤관석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오병윤 · 이상규 · 이석기 · 김미희 ·
김재연 · 이만우 · 김재윤 · 정진후 · 김승남 ·
이개호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3 김우남 · 최규성 · 장하나 · 이개호 ·
김영록 · 진성준 · 김춘진 · 전병헌 · 윤관석 ·
유성엽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황인자 · 손인춘 · 노철래 · 정희수 ·
박윤옥 · 이자스민 · 이완영 · 윤상현 · 이에리사 ·
홍문표 의원 발의)

11월 1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무기거래조약 비준동의안

(2014. 11. 13 정부 제출)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김우남·최규성·장하나·이개호·김영록·진성준·황주홍·김춘진·전병헌·윤관석 의원 발의)

11월 1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김우남·최규성·장하나·이개호·김영록·진성준·황주홍·김춘진·전병헌·윤관석 의원 발의)

11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김우남·최규성·장하나·이개호·김영록·진성준·김춘진·전병헌·윤관석·유성엽 의원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김우남·최규성·장하나·이개호·김영록·진성준·김춘진·전병헌·윤관석·유성엽 의원 발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3 이이재·김우남·황영철·김진태·윤상현·권성동·정문헌·김을동·유승우·염동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4 이현재·김무성·이완구·김을동·정갑윤·이인제·이한구·강기윤·강길부·강석호·강석훈·강은희·강창희·경대수·권성동·권은희·길정우·김광림·김기선·김도읍·김상훈·김성찬·김성태·김영우·김용남·김장실·김재경·김재원·김제식·김종태·김종훈·김태원·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숙·김희선·김희국·나경원·나성린·노철래·류성걸·류지영·문대성·문정림·박대동·박대출·박맹우·박명재·박윤옥·박인숙·배덕광·서용교·서청원·손인춘·송광호·신경림·심윤조·심재철·심학봉·안덕수·안효대·양창영·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승민·유의동·

윤명희·윤영석·윤재옥·이강후·이군현·이노근·이만우·이명수·이병석·이완영·이우현·이운룡·이이재·이자스민·이장우·이재오·이정현·이종배·이종진·이진복·이채익·이학재·이한성·이헌승·전하진·정문헌·정미경·정용기·정희수·조원진·주영순·진영·최봉홍·한기호·함진규·홍문중·홍문표·홍일표·홍지만·홍철호·황인자·황진하 의원 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4 이찬열·최원식·이종걸·김윤덕·윤호중·노웅래·김성곤·박주선·변재일·김경협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4 정부 제출)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4 유승희·장병완·김영환·최원식·김윤덕·노웅래·임수경·최민희·박남춘·황주홍·임내현 의원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4 이완구·박윤옥·강은희·황인자·민현주·이재영·윤명희·김을동·손인춘·민병주·문정림·이자스민·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7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4 양창영·문대성·민현주·이자스민·원혜영·서용교·안홍준·이이재·김정록·이에리사·최봉홍 의원 발의)

11월 1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4 김영록·강기정·김우남·김춘진·박주선·정호준·이종걸·임수경·추미애·홍영표 의원 발의)

11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4 권은희·김용익·이개호·노웅래·배재정·윤후덕·진선미·임수경·홍종학·

이해찬 · 강기정 · 장병완 · 박주선 · 임내현 · 김성곤 · 박혜자 · 김관영 · 박광운 · 김기준 · 송호창 · 최원식 · 윤호중 · 주승용 · 박남춘 · 김동철 의원 발의)

1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4 박병석 · 유기홍 · 전순옥 · 임수경 · 안민석 · 정청래 · 황주홍 · 진정희 · 박범계 · 박남춘 · 박주선 · 김상희 의원 발의)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4 유의동 · 류지영 · 이강후 · 김용태 · 홍철호 · 경대수 · 송영근 · 송광호 · 이진복 · 김태흠 의원 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4 이철우 · 장윤석 · 황인자 · 박명재 · 서상기 · 홍지만 · 윤재옥 · 강은희 · 이완영 · 권은희 의원 발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4 이철우 · 장윤석 · 황인자 · 박명재 · 서상기 · 홍지만 · 윤재옥 · 강은희 · 이완영 · 권은희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4 이철우 · 장윤석 · 황인자 · 박명재 · 윤재옥 · 강은희 · 이완영 · 권은희 · 권성동 · 한기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장애인 ·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4 백재현 · 김성곤 · 임수경 · 정청래 · 윤관석 · 오제세 · 박남춘 · 이찬열 · 이상규 · 윤후덕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4 김성태 · 양창영 · 함진규 · 박성호 · 이완영 · 정병국 · 홍지만 · 하태경 · 권성동 · 김용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4 장하나 · 김광진 · 김우남 · 김제남 · 박남춘 · 박민수 · 안민석 · 은수미 · 이인영 · 전순옥 · 정성호 · 최동익 의원 발의)

11월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4 강은희 · 최봉홍 · 전하진 · 심학봉 · 서상기 · 서청원 · 이학재 · 이철우 · 박창식 · 이에리사 의원 발의)

11월 1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7 인재근 · 이인영 · 우원식 · 김광진 · 이목희 · 부좌현 · 강동원 · 김승남 · 최규성 · 박남춘 · 전순옥 · 최동익 · 유은혜 · 이자스민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7 인재근 · 전순옥 · 이목희 · 이자스민 · 박남춘 · 김상희 · 김승남 · 우원식 · 윤관석 · 이인영 · 유은혜 · 김광진 · 부좌현 · 강동원 · 최규성 · 최동익 의원 발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7 인재근 · 이인영 · 우원식 · 김광진 · 이목희 · 부좌현 · 강동원 · 김승남 · 최규성 · 박남춘 · 전순옥 · 최동익 · 유은혜 · 이자스민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7 김재경 · 김관영 · 함진규 · 권성동 · 강석호 · 이이재 · 김정록 · 민홍철 · 김장실 · 이에리사 의원 발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7 김태흠 · 정성호 · 김성곤 · 이한성 · 정문헌 · 김제식 · 유의동 · 장윤석 · 김명연 · 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립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종태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7 김종태 · 김우남 · 홍문표 · 송영근 · 이철우 · 김영록 · 김춘진 · 경대수 · 박명재 · 정희수 의원 발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7 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헌 ·

유승우 · 이완영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의원 발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7 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헌 ·
유승우 · 이완영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의원 발의)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헌 ·
유승우 · 이완영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헌 ·
유승우 · 홍철호 · 송영근 · 황인자 · 이이재 ·
김재경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조해진 · 김종태 · 이한성 · 박윤옥 ·
서상기 · 김을동 · 이상일 · 민병주 · 강석호 ·
배덕광 의원 발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조해진 · 김종태 · 이한성 · 박윤옥 ·
서상기 · 김을동 · 이상일 · 민병주 · 강석호 ·
배덕광 의원 발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조해진 · 김종태 · 이한성 · 박윤옥 ·
서상기 · 김을동 · 이상일 · 민병주 · 강석호 ·
배덕광 의원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유승희 · 황주홍 · 이개호 · 박남춘 ·
최원식 · 김성곤 · 임수경 · 은수미 · 우원식 ·
송호창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8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박명재 · 이노근 · 배덕광 · 정문헌 ·
이만우 · 서용교 · 정두언 · 정용기 · 박성호 ·
이장우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7 홍의락 · 이개호 · 배재정 · 이한성 ·
임수경 · 오제세 · 김성곤 · 임내현 · 이해찬 ·
홍종학 · 김광진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7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18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부좌현 · 이개호 · 도중환 · 정청래 ·
정성호 · 오제세 · 박민수 · 오영식 · 송호창 ·
김윤덕 의원 발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부좌현 · 이개호 · 김성곤 · 박남춘 ·
김우남 · 정성호 · 김광진 · 정청래 · 인재근 ·
김윤덕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시각장애인인의 발행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쉬 조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2014. 11. 17 최동익 · 이개호 · 유기홍 · 박남춘 ·
추미애 · 김현미 · 김광진 · 인재근 · 안규백 ·
우원식 · 김성주 · 김용익 · 정성호 의원 발의)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부좌현 · 이개호 · 정청래 · 정성호 ·
김우남 · 김성곤 · 오영식 · 박남춘 · 김윤덕 ·
김광진 의원 발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권성동 · 김재원 · 김진태 · 정문헌 ·
유승우 · 이완영 · 홍철호 · 송영근 · 김한표 ·
황인자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이개호 · 황주홍 · 정세균 · 김우남 ·
최민희 · 부좌현 · 김성곤 · 김광진 · 강동원 ·
박남춘 · 안민석 · 이연주 · 강창일 · 오병윤 의원
발의)

11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유대운 · 김용익 · 진선미 · 이개호 ·
강동원 · 박민수 · 임수경 · 정청래 · 주승용 ·

이찬열 의원 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7 서영교·이개호·노웅래·임수경·박원석·박홍근·김성곤·우원식·오병윤·정진후 의원 발의)

지속가능발전법 폐지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기준·한명숙·이미경·김경협·우원식·이종걸·이상직·신학용·이학영·최민희·장하나 의원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용남·황영철·김종태·송영근·홍철호·주영순·최봉홍·권성동·배덕광·문대성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배재정·윤관석·박홍근·도종환·유기홍·이개호·박주선·이찬열·정진후·오영식·신경민·우원식·안민석·설훈·심상정·權根希·박남춘·장하나·홍의락·유은혜 의원 발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권성동·김재원·김진태·정문헌·유승우·이완영·홍철호·송영근·김한표·황인자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영주·박병석·김기준·박민수·강기정·이원욱·정세균·홍익표·은수미·김성주·이미경·임수경·박주선·권성동 의원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기준·한명숙·이미경·김경협·우원식·이종걸·이상직·신학용·이학영·최민희·장하나 의원 발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이상직·정성호·김광진·정청래·박민수·부좌현·박남춘·전정희·김관영·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이상직·정성호·김광진·정청래·박민수·부좌현·박남춘·전정희·김관영·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이상직·정성호·김광진·정청래·박민수·부좌현·박남춘·전정희·김관영·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이상직·정성호·김광진·정청래·박민수·부좌현·박남춘·전정희·김관영·김윤덕·김우남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우남·신정훈·강기정·백재현·김광진·김춘진·김영록·조경태·부좌현·조정식 의원 발의)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정록·유승민·류지영·조명철·김한표·이상일·강길부·이에리사·민현주·황인자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정록·유승민·류지영·김한표·강길부·이에리사·김재경·민현주·황인자·김명연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정록·유승민·류지영·강길부·양창영·김재경·민현주·황인자·김명연·이에리사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정희수·이한성·김종태·조명철·권은희·김태환·김상훈·박맹우·송영근·이자스민 의원 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제식·김정록·양승조·김기선·김성주·이종진·인재근·신경림·박윤옥·문정림·이한성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우남·신정훈·강기정·백재현·

김광진 · 김춘진 · 김영록 · 조정태 · 부좌현 ·
조정식 의원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8 김진태 · 류지영 · 송영근 · 권성동 ·
김희선 · 김기선 · 심재철 · 김도읍 · 정문현 ·
한기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민기 · 이개호 · 부좌현 · 정청래 ·
김기준 · 이목희 · 박남춘 · 박민수 · 송호창 ·
김광진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8 정청래 · 한명숙 · 부좌현 · 박민수 ·
김우남 · 임내현 · 강기정 · 김광진 · 최민희 ·
김민기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9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전정희 · 김관영 · 김성곤 · 백재현 ·
이원욱 · 김윤덕 · 김동철 · 추미애 · 오영식 ·
윤관석 · 윤후덕 · 김경협 · 박민수 · 이미경 ·
이상직 의원 발의)

**11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최민희 · 박원석 · 김현 · 송호창 ·
진선미 · 유승희 · 이개호 · 임수경 · 이학영 ·
민홍철 의원 발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한기호 · 김용태 · 안덕수 · 이이재 ·
윤후덕 · 유승민 · 백군기 · 김재원 · 김기선 ·
안규백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8 정부 제출)

**11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수성 의원
발의)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조명철 · 김태원 · 박대동 · 박덕흠 ·
박윤옥 · 배덕광 · 송영근 · 유일호 · 윤명희 ·
이운룡 · 이장우 · 이종진 · 이한성 · 정문현 ·
정수성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유기홍 · 부좌현 · 배재정 · 한명숙 ·
노웅래 · 이원욱 · 이개호 · 임수경 · 설훈 ·
박주선 · 안민석 · 이상규 · 김용익 · 윤관석 ·
도종환 · 조정식 · 김승남 · 정진후 · 김태년 ·
유은혜 의원 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배재정 · 윤관석 · 박홍근 · 도종환 ·
김태년 · 유기홍 · 이개호 · 박주선 · 이찬열 ·
송호창 · 정진후 · 오영식 · 양승조 · 우원식 ·
설훈 · 심상정 · 장하나 · 홍의락 · 유은혜 ·
박남춘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유기홍 · 부좌현 · 배재정 · 한명숙 ·
노웅래 · 김기준 · 이원욱 · 이개호 · 임수경 ·
설훈 · 이해찬 · 박주선 · 안민석 · 박혜자 ·
이상규 · 김용익 · 윤관석 · 도종환 · 조정식 ·
박홍근 · 김승남 · 정진후 · 김태년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정청래 · 김민기 · 한명숙 · 부좌현 ·
박민수 · 김우남 · 이춘석 · 강기정 · 김광진 ·
최민희 의원 발의)

이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정청래 · 민홍철 · 우윤근 · 박민수 ·
배재정 · 이춘석 · 김광진 · 진성준 · 부좌현 ·
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18 강길부 · 박대동 · 박명재 · 최봉홍 ·
박창식 · 이노근 · 김정록 · 문정림 · 이만우 ·
박맹우 · 김현숙 의원 발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강길부 · 박대동 · 박명재 · 최봉홍 ·
박창식 · 이노근 · 김정록 · 문정림 · 이만우 ·

박맹우 의원 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강길부·박대동·박명재·최봉홍·이노근·김정록·문정림·이만우·박맹우·주영순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한기호·이철우·김용태·안덕수·손인춘·이이재·황영철·윤후덕·유승민·송영근·백군기·김기선 의원 발의)

11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8 김제식·김정록·양승조·김기선·김성주·이종진·인재근·신경림·박윤옥·문정림 의원 발의)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9 임내현·김관영·김성곤·박광운·박남춘·안민석·유승희·윤관석·이미경·이정현·이한성 의원 발의)

1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정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9 전정희·김동철·안홍준·이윤석·박주선·김관영·이찬열·박수현·윤후덕·김경협·박민수·이상직 의원 발의)

11월 2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9 권은희·송영근·한기호·황진하·윤후덕·안규백·진성준·김광진·백군기·김성찬 의원 발의)

11월 19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9 정부 제출)

**11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9 최민희·민홍철·김제남·이개호·김현·정청래·김현미·이인영·임수경·부좌현 의원 발의)

11월 19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19 정부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9 부좌현·이개호·도중환·정청래·정성호·오제세·박민수·오영식·박남춘·김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약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9 부좌현·이개호·도중환·정청래·김우남·김성곤·이목희·박민수·박남춘·김현 의원 발의)

11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9 윤호중·정성호·설훈·김현미·윤관석·최재성·오제세·이미경·변재일·김관영 의원 발의)

11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19 진선미·정청래·도중환·권은희·박남춘·신경민·유대운·주승용·홍의락·이개호·송호창 의원 발의)

11월 20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박대동·김태환·정희수·강석훈·정수성·이철우·이강후·정갑윤·강길부·김희국 의원 발의)

11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최규성·박주선·주승용·김윤덕·이상직·김승남·노영민·김영록·김우남·김춘진 의원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최규성·박주선·주승용·김윤덕·이상직·김승남·노영민·김영록·김우남·김춘진 의원 발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최규성·박주선·주승용·김윤덕·이상직·김승남·노영민·김영록·김우남·김춘진 의원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최규성 · 박주선 · 주승용 · 김윤덕 · 이상직 · 김승남 · 노영민 · 김영록 · 김우남 · 김춘진 의원 발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성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최규성 · 박주선 · 주승용 · 김윤덕 · 이상직 · 김승남 · 노영민 · 김영록 · 김우남 · 김춘진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김진태 · 정문헌 · 유의동 · 유승민 · 강기윤 · 홍철호 · 이한성 · 조명철 · 김기선 · 이만우 의원 발의)

11월 2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이완영 · 김상훈 · 이우현 · 강석호 · 강길부 · 김현숙 · 홍지만 · 홍철호 · 강기윤 · 김성태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김경협 · 김춘진 · 이찬열 · 최원식 · 홍영표 · 심상정 · 안규백 · 윤후덕 · 장하나 · 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20 정부 제출)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김경협 · 김성곤 · 김광진 · 김승남 · 박민수 · 박남춘 · 송호창 · 이종걸 · 김상희 · 이찬열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조정식 · 김민기 · 김성곤 · 노영민 · 민홍철 · 박기춘 · 부좌현 · 윤관석 · 이개호 · 이찬열 의원 발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박영선 · 이개호 · 유은혜 · 양승조 · 박범계 · 전병헌 · 윤호중 · 박홍근 · 민병두 · 박광온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신경민 · 한명숙 · 도종환 · 심재권 ·

김현미 · 박광온 · 김성곤 · 이찬열 · 이종걸 · 김광진 의원 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부좌현 · 김성곤 · 박남춘 · 김우남 · 정성호 · 정청래 · 인재근 · 오제세 · 김윤덕 · 이찬열 의원 발의)

11월 2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박민수 · 김광진 · 김기준 · 황주홍 · 김우남 · 박남춘 · 김성곤 · 남인순 · 유성엽 · 김승남 의원 발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박민수 · 김춘진 · 장하나 · 부좌현 · 김승남 · 정성호 · 황주홍 · 양승조 · 전병헌 · 김관영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이찬열 · 박주선 · 강기정 · 김현미 · 최원식 · 신경민 · 김경협 · 배재정 · 박남춘 · 안규백 의원 발의)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김춘진 · 이종배 · 박광온 · 김우남 · 김영록 · 김성곤 · 이상직 · 김윤덕 · 노영민 · 김경협 의원 발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김춘진 · 이종배 · 김윤덕 · 김경협 · 김성곤 · 노영민 · 이상직 · 박광온 · 박민수 · 김우남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황인자 · 손인춘 · 박성호 · 김장실 · 이완영 · 홍철호 · 황영철 · 권성동 · 이철우 · 김정록 · 김학용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호창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송호창 · 이원욱 · 김관영 · 부좌현 · 박남춘 · 배재정 · 權根希 · 이인영 · 원혜영 · 최민희 · 전정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20 정부 제출)

11월 21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추미애·유기홍·이개호·최민희·안민석·오영식·정청래·김승남·이원욱·박남춘·김영록·김성곤·이종걸·김관영·전정희·유성엽·김광진·진성준·윤관석·안규백·문희상·박광온·노영민·임수경 의원 발의)

11월 21일 기획재정부위원회에 회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도종환·박주선·안민석·유기홍·설훈·배재정·유은혜·유승희·박남춘·정성호·황주홍·신경민·정청래·최민희 의원 발의)

11월 2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신경민·이찬열·이원욱·임수경·배재정·박광온·박남춘·정성호·김기식·원혜영·박민수 의원 발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신경민·이찬열·이원욱·임수경·배재정·박광온·박남춘·정성호·김기식·원혜영·박민수 의원 발의)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0 신경민·이찬열·이원욱·임수경·배재정·박광온·박남춘·정성호·김기식·원혜영·박민수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박남춘·임수경·최민희·인재근·김성곤·주승용·김현·김제남·정청래·유대운·박민수 의원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박남춘·최민희·인재근·김성곤·김현·김제남·유대운·이찬열·박민수·장하나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박남춘·임수경·최민희·인재근·

김성곤·주승용·김현·김제남·정청래·노웅래·박민수 의원 발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정청래·진선미·김광진·김현·김민기·부좌현·정성호·박남춘·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정청래·진선미·김광진·김현·김민기·부좌현·정성호·박남춘·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진선미·정청래·황주홍·이목희·최원식·신경민·유승희·유은혜·주승용·정성호·홍의락·정진후·김제남·심상정·서기호·우원식·은수미·이학영·이미경·도종환·이개호·송호창·오병윤·최민희·김기식·서영교 의원 발의)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정청래·진선미·김광진·김현·김민기·부좌현·정성호·박남춘·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정청래·진선미·김광진·김현·김민기·부좌현·정성호·박남춘·주승용·강창일 의원 발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민기·이개호·황주홍·부좌현·박남춘·임수경·주승용·송호창·이목희·조정식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영록·강기정·김승남·김우남·김춘진·박주선·신정훈·임수경·추미애·홍문표 의원 발의)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주승용·박남춘·변재일·임내현·노영민·최규성·박주선·이윤석·김우남·김성곤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조원진·유성엽·권은희·윤후덕·

김영록 · 이재영 · 김장실 · 이완영 · 정용기 · 강기윤 · 윤재옥 · 김상훈 의원 발의)

이상 12건 11월 2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영우 · 김무성 · 주호영 · 정문헌 · 김재원 · 원유철 · 조해진 · 김태호 · 하태경 · 강창희 · 이완구 · 윤상현 · 황진하 · 박인숙 · 심윤조 · 유기준 · 정희수 · 홍문표 · 홍문종 · 김성찬 · 홍일표 · 류지영 · 김현숙 · 박창식 · 나성린 · 이이재 · 김용태 · 강석훈 · 김정록 · 이진복 · 이한성 · 김학용 · 김종훈 · 김세연 의원 발의)

11월 21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대한민국의 유럽연합 위기관리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협정 비준동의안

(2014. 11. 21 정부 제출)

11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강은희 · 손인춘 · 윤명희 · 박명재 · 이상일 · 송영근 · 서청원 · 김종태 · 이철우 · 박창식 · 조명철 · 홍철호 의원 발의)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부좌현 · 유대운 · 이개호 · 정청래 · 인재근 · 박남춘 · 이찬열 · 김승남 · 박민수 · 조정식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영록 · 강기정 · 김승남 · 김우남 · 김춘진 · 박주선 · 이종걸 · 임수경 · 정호준 · 홍문표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영록 · 강기정 · 김승남 · 김우남 · 김춘진 · 박주선 · 이종걸 · 임수경 · 정호준 · 홍문표 의원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영록 · 이종걸 · 박주선 · 김승남 · 강기정 · 김우남 · 김성곤 · 임수경 · 김춘진 · 홍문표 의원 발의)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21 조원진 · 유성엽 · 권은희 · 윤후덕 · 김영록 · 이재영 · 김장실 · 이완영 · 윤재옥 · 김상훈 · 윤상현 · 강기윤 · 정용기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부좌현 · 유대운 · 이개호 · 정청래 · 인재근 · 박남춘 · 이찬열 · 김승남 · 박민수 · 조정식 · 홍의락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상희 · 김윤덕 · 최규성 · 김경협 · 정성호 · 원혜영 · 장하나 · 박수현 · 이미경 · 설훈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이원욱 · 전순옥 · 이강후 · 부좌현 · 박남춘 · 이찬열 · 정성호 · 전정희 · 박홍근 · 박민수 · 이학영 · 김우남 · 이석현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21 임내현 · 정청래 · 김동철 · 이원욱 · 홍의락 · 유승희 · 정성호 · 김광진 · 유은혜 · 김우남 · 김승남 · 김성곤 · 주승용 의원 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희국 · 김태흠 · 박대동 · 윤재옥 · 이장우 · 이우현 · 이완영 · 이인제 · 이현승 · 함진규 의원 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희국 · 이장우 · 이우현 · 김태흠 · 이완영 · 함진규 · 이인제 · 이현승 · 윤재옥 · 박대동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이찬열 · 부좌현 · 김성곤 · 박주선 · 변재일 · 조정식 · 신경민 · 김태년 · 강동원 · 김현 의원 발의)

11월 24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이찬열 · 김윤덕 · 박주선 · 강동원 · 김경협 · 부좌현 · 김성곤 · 변재일 · 조정식 · 윤호중 의원 발의)

11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영록 · 강기정 · 김승남 · 김우남 ·

김춘진 · 박주선 · 임수경 · 정호준 · 추미애 ·
홍문표 의원 발의)

11월 24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발명교육 지원법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상훈 · 강은희 · 홍지만 · 부좌현 ·
유승우 · 이찬열 · 정희수 · 이완영 · 서상기 ·
강석호 · 주호영 · 송영근 · 함진규 의원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한표 · 권성동 · 안홍준 · 민현주 ·
홍지만 · 김태원 · 김정록 · 류지영 · 이한성 ·
윤명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4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영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1 김학용 · 이만우 · 장윤석 · 류지영 ·
김종태 · 황인자 · 박창식 · 신성범 · 경대수 ·
이노근 의원 발의)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후보자(정재찬) 인사청문요청안
(2014. 11. 21 대통령 제출)

11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무위원후보자(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 인사청문요청안
(2014. 11. 21 대통령 제출)

11월 24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윤재옥 · 김한표 · 이종훈 · 정용기 ·
문대성 · 이재영 · 정수성 · 김종훈 · 신동우 ·
유승우 · 김희국 의원 발의)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24 김태원 · 이명수 · 이만우 · 변재일 ·
김희국 · 함진규 · 문대성 · 임내현 · 이노근 ·
홍의락 의원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변재일 · 오제세 · 주승용 · 박남춘 ·
이찬열 · 강동원 · 이윤석 · 장병완 · 양승조 ·
박수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김춘진 · 홍문표 · 김우남 · 김영록 ·
김윤덕 · 김경협 · 최규성 · 김민기 · 김기선 ·

추미애 의원 발의)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황주홍 · 김영환 · 문병호 · 신학용 ·
유성엽 · 주승용 · 김성곤 · 이종걸 · 이원욱 ·
백재현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24 강석훈 · 송영근 · 김희선 · 양창영 ·
나성린 · 서용교 · 박성호 · 김광림 · 박명재 ·
하태경 의원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24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정희수 · 김종태 · 이만우 · 이명수 ·
손인춘 · 홍철호 · 이자스민 · 이에리사 · 이노근 ·
이한성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5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김용태 · 한기호 · 정두언 · 정우택 ·
주호영 · 박대동 · 유일호 · 유의동 · 김태환 ·
김정훈 · 김상민 의원 발의)

11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김용태 · 한기호 · 정두언 · 정우택 ·
주호영 · 박대동 · 유일호 · 유의동 · 김태환 ·
김정훈 · 김상민 의원 발의)

11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민현주 · 김정록 · 김한표 · 이만우 ·
최봉홍 · 심상정 · 권성동 · 박윤옥 · 양승조 ·
이자스민 의원 발의)

11월 25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이자스민 · 이만우 · 이완영 · 이우현 ·
정희수 · 인재근 · 홍철호 · 민현주 · 김정록 ·
정문헌 의원 발의)

11월 25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석훈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강석훈 · 송영근 · 김희선 · 양창영 ·
나성린 · 서용교 · 박성호 · 김광림 · 박명재 ·

하태경 의원 발의)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완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이완구·이인제·황영철·박수현·김태흠·이명수·홍문표·이상일·경대수·강은희·이에리사 의원 발의)

11월 25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4 정희수·김대환·이한성·김상훈·박맹우·송영근·김종태·이노근·이명수·최봉홍 의원 발의)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김광진·노영민·박남춘·박민수·박주선·박홍근·변재일·부좌현·최민희·최재성 의원 발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조명철·박덕흠·정수성·박대동·유일호·이운룡·박윤옥·이종진·윤명희·김태원·이장우·배덕광·송영근·이한성 의원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민병두·박남춘·최원식·전순옥·김현미·김성곤·정성호·김광진·홍종학·이원욱·윤호중·원혜영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강은희·이상일·윤명희·서청원·김종태·이철우·신경림·홍철호·양승조·정병국·유승우·이한성·정성호 의원 발의)

11월 26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강창일·김우남·이원욱·이찬열·박남춘·홍의락·이개호·정청래·변재일·주승용 의원 발의)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전해철·백재현·강동원·최동익·이개호·이상직·유성엽·부좌현·이찬열·최원식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황인자·김상훈·정희수·양창영·윤상현·이명수·홍철호·권성동·이철우·김현숙·이에리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6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김성태·강석호·김희국·함진규·이노근·황영철·이윤석·이상직·조현룡·김태원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박수현·이미경·윤호중·김상희·강창일·변재일·장하나·김용익·김경협·심상정·오병윤·이헌승 의원 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김한표·권성동·안홍준·민현주·홍지만·김태원·류지영·이한성·윤명희·이명수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오병윤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오병윤·윤후덕·김미희·이상규·김재연·이석기·이만우·김승남·이윤석·신정훈 의원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길정우·홍일표·이한성·심윤조·강석훈·이노근·박인숙·김을동·함진규·김성곤·김태원·이우현 의원 발의)

**이상 5건 11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김한표·권성동·안홍준·홍지만·김태원·김정록·류지영·이한성·윤명희·이명수 의원 발의)

**11월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김춘진·김영록·이종배·김우남·이상직·박민수·김윤덕·정호준·김경협·노영민·김영주 의원 발의)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이개호·김경협·황주홍·정성호·서기호·박홍근·박남춘·이학영·김승남·김윤덕·강창일·김성곤·김우남·박민수 의원 발의)

**11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5 이개호·김경협·유승희·황주홍·서기호·박홍근·박남춘·배재정·이학영·김윤덕·강창일·김성곤·김우남·김성주 의원 발의)

**11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유승희·최동익·김광진·이개호·이미경·추미애·정청래·박남춘·백재현·임수경·김우남 의원 발의)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4. 11. 26 정보위원장 제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권성동·홍철호·유승우·정문헌·황인자·이이재·김재경·박덕흠·송영근·김재원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이인영·인재근·송호창·우원식·임수경·박홍근·김용익·최원식·이원욱·한명숙·이목희·오영식·장하나·전순옥·박남춘·최민희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이인영·인재근·송호창·우원식·임수경·박홍근·김용익·최원식·이원욱·한명숙·이목희·오영식·장하나·전순옥·박남춘·최민희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4. 11. 26 정부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박남춘·임수경·최민희·인재근·

김성곤·주승용·김현·김제남·유대운·노웅래·박민수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부좌현·서영교·이개호·조정식·김우남·전해철·이원욱·김성곤·임수경·박민수 의원 발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강기운·권성동·김진태·김태원·류지영·박덕흠·이명수·이완영·이우현·조원진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강기운·권성동·김태원·박덕흠·유승민·이명수·이우현·이에리사·정갑윤·조원진·박대출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강기운·이우현·김태원·류지영·김진태·이완영·이명수·박덕흠·권성동·조원진 의원 발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이개호·서기호·조정식·이학영·강창일·김성곤·김윤덕·김우남·장병완·부좌현·박민수 의원 발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임수경·박홍근·최규성·김광진·이원욱·윤관석·김영록·박수현·조정식·강창일 의원 발의)

**이상 9건 11월 27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김춘진·홍문표·김우남·박범계·배재정·김윤덕·김경협·이찬열·김영록·최규성 의원 발의)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이이재·이우현·이종배·이노근·정문헌·조해진·김기선·황영철·권성동·김을동 의원 발의)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강기윤·이우현·김태원·류지영·김진태·이완영·이명수·박덕흠·권성동·조원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윤재옥·박명재·유승민·김태원·이한성·김태환·이에리사·김기준·이철우·박창식 의원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안민석·이개호·박홍근·유은혜·배재정·도종환·정진후·설훈·윤관석·이찬열 의원 발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안민석·이개호·박홍근·유은혜·배재정·설훈·윤관석·유기홍·이찬열·정진후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7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김광진·노영민·박남춘·박민수·박홍근·변재일·부좌현·이개호·이해찬·정청래 의원 발의)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강기윤·나성린·김한표·심재철·이완영·서영교·김태원·이우현·이명수·이에리사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조해진·서상기·배덕광·민병주·심학봉·김재경·홍지만·류지영·김을동·이만우·강길부 의원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26 이개호·서기호·조정식·이학영·김윤덕·강창일·김성곤·김우남·장병완·부좌현·박민수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임수경·박홍근·최규성·유승희·김광진·이원욱·윤관석·김영록·추미애·박수현 의원 발의)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임수경·박홍근·최규성·유승희·김광진·이원욱·윤관석·김영록·추미애·박수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6 임수경·박홍근·최규성·김광진·이원욱·윤관석·김영록·추미애·박수현·조정식 의원 발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26 임수경·박홍근·최규성·김광진·이원욱·윤관석·김영록·추미애·박수현·조정식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27일 여성가족위원회 회부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 2014. 11. 26 정부 제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김민기·이개호·부좌현·홍의락·박남춘·주승용·김기준·이목희·박민수·김승남 의원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양승조·김성곤·김우남·박민수·안규백·이개호·이목희·이상직·전정희·정성호 의원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양승조·이개호·김우남·정성호·이상직·안규백·박민수·김성곤·전정희·이목희 의원 발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양승조·이개호·김우남·정성호·이상직·안규백·박민수·김성곤·전정희·이목희 의원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양승조·김성곤·김우남·박민수·안규백·이개호·이목희·이상직·전정희·정성호 의원 발의)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이종걸·김영록·추미애·민병두·황주홍·신정훈·정세균·이상직·이학영·홍종학·양창영 의원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이종걸·김영록·추미애·민병두·황주홍·신정훈·정세균·이상직·이학영·홍종학 의원 발의)

이상 7건 11월 2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김민기·이개호·이해찬·정청래·노웅래·홍의락·임수경·이인영·진선미·김승남·홍종학 의원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김민기·이개호·김기준·노웅래·홍의락·임수경·진선미·김승남·이인영·홍종학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이노근·안덕수·이완영·함진규·염동열·김상훈·강기윤·김태원·윤명희·안효대 의원 발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황인자·홍문표·강석훈·양창영·심윤조·윤상현·이명수·권성동·이철우·김정록 의원 발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조정식·임수경·장병완·박혜자·박수현·변재일·최동익·최재성·이찬열·김현·강동원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진선미·한명숙·유은혜·이목희·정성호·이개호·주승용·이학영·부좌현·박남춘·최민희·임수경·김기식 의원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 11. 27 정부 제출)

이상 7건 11월 28일 안전행정부위원회에 회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김재원·김태원·경대수·권성동·강기윤·한기호·이이재·이명수·김제식·최봉홍 의원 발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조정식·임수경·장병완·박혜자·박수현·변재일·최동익·최재성·이찬열·김현·강동원 의원 발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조정식·임수경·장병완·박혜자·박수현·변재일·최동익·최재성·이찬열·김현·강동원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조정식·임수경·장병완·박혜자·박수현·변재일·최동익·최재성·이찬열·김현·강동원 의원 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조정식·임수경·장병완·박혜자·박수현·변재일·최동익·최재성·이찬열·김현·강동원 의원 발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조정식·임수경·장병완·박혜자·박수현·변재일·최동익·최재성·이찬열·김현·강동원 의원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조정식·임수경·장병완·박혜자·박수현·변재일·최동익·최재성·이찬열·김현·강동원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장윤석·이현재·이채익·경대수·이철우·박민식·유승우·이만우·김상훈·이에리사·김태흠·정희수 의원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이종걸·김영록·추미애·민병두·황주홍·신정훈·정세균·이상직·이학영·홍종학 의원 발의)

이상 9건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김민기·이개호·부좌현·박남춘·임수경·이목희·정청래·조정식·박민수·김승남 의원 발의)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조정식·임수경·장병완·박혜자·박수현·변재일·최동익·최재성·이찬열·김현·강동원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조정식·장병완·박혜자·박수현·
변재일·최동익·배재정·최재성·이찬열·
김현·강동원 의원 발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27 조정식·임수경·장병완·박혜자·
박수현·변재일·최동익·최재성·이찬열·
김현·강동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양승조·김성곤·김우남·박민수·
안규백·이개호·이상직·전정희·정성호·
황주홍 의원 발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27 양승조·김성곤·김우남·박민수·
안규백·이개호·이목희·이상직·전정희·
정성호 의원 발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양승조·김성곤·김우남·박민수·
안규백·이개호·이목희·이상직·전정희·
정성호 의원 발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양승조·김성곤·김우남·박민수·
안규백·이개호·이목희·이상직·전정희·
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원혜영·홍종학·진선미·신정훈·
전정희·민병두·김승남·백재현·김기식·
김윤덕·조정식 의원 발의)

11월 28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김상희·김현미·유기홍·이미경·
최동익·박홍근·우원식·이학영·유은혜·
정성호·안민석·양승조·최재성·김경협·
유성엽·김윤덕 의원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김상희·김현미·유기홍·최동익·
박홍근·우원식·이학영·이미경·유은혜·
정성호·안민석·양승조·최재성·김경협·
유성엽·김윤덕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
발의)

(2014. 11. 27 이장우·조현룡·김희국·박명재·
이노근·이우현·이현승·함진규·김성태·
이윤석 의원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완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이완영·박명재·이우현·이노근·
홍지만·함진규·김윤덕·강석호·강길부·
유기준·이윤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7 조원진·이완영·권은희·김상훈·
정용기·유성엽·강기윤·이재영·김태흠·
경대수 의원 발의)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부좌현·이개호·이원욱·김성곤·
전정희·박민수·김우남·정성호·정청래·
박남춘 의원 발의)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부좌현·서영교·이개호·조정식·
김우남·전해철·이원욱·박민수·정청래·
박남춘·윤관석 의원 발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유성엽·최원식·김승남·김성곤·
김광진·임수경·황주홍·여상규·박민수·
김우남·김영록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부좌현·장하나·이개호·전해철·
이원욱·서기호·김성곤·임수경·박민수·
김우남·정호준·박남춘 의원 발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박영선·이개호·박범계·박홍근·김기식·박광운·신경민·김태년·강동원·유대운·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김관영·강동원·김광진·김기준·김성곤·김성주·김승남·김윤덕·김현·남인순·문희상·박광운·박수현·박홍근·백재현·송호창·신계륜·신기남·양승조·오제세·우상호·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상직·이윤석·이학영·인재근·임내현·장하나·전순옥·전정희·정성호·정진후·조정식·주승용·주호영·최규성·추미애·한명숙·홍의락 의원 발의)

12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주승용·박남춘·변재일·노영민·최규성·박주선·이윤석·김우남·김성곤·강창일 의원 발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주승용·박남춘·변재일·노영민·최규성·박주선·이윤석·김우남·김성곤·강창일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이노근·정희수·강석호·이우현·정문헌·조현룡·이명수·김태원·박명재·이이재·강길부·유기준 의원 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이장우·이노근·이우현·함진규·김성태·이완영·김희국·이상직·조현룡·이윤석 의원 발의)

이상 4건 12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주승용·변재일·이윤석·김영환·강기정·강창일·최규성·김성곤·김광진·박주선 의원 발의)

12월 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함진규·이현승·하태경·이노근·김희국·이우현·홍지만·정수성·이종진·박윤옥·김기선 의원 발의)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함진규·이현승·이노근·김희국·이우현·유승우·김동완·홍지만·이종진·박윤옥 의원 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김성태·김기선·주영순·강석호·최봉홍·김명연·하태경·권성동·이우현·김용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주호영·서상기·김장실·홍지만·정두언·홍철호·김광림·김제식·이만우·김희국 의원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주호영·서상기·김장실·이상일·정두언·김제식·김상훈·홍철호·이만우·김희국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박영선·이개호·양승조·박범계·윤호중·박홍근·민병두·박광운·신경민·김태년·강동원 의원 발의)

12월 1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 의원 대표발의)
(2014. 11. 28 강창일·김우남·박민수·부좌현·이개호·이목희·임수경·정성호·정호준·주승용 의원 발의)

12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2014. 12. 1 정부 제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진선미·한명숙·유은혜·이목희·정성호·이개호·주승용·이학영·최민희·부좌현·박남춘·임수경·김기식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강동원·김광진·유성엽·부좌현·이윤석·김민기·김우남·이찬열·조정식·

진선미 의원 발의)

이상 3건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대표 발의)

(2014. 12. 1 백재현·안규백·유기홍·유성엽·진성준·박완주·박홍근·우윤근·윤관석·조정식·김관영·박범계·김광진·문희상·문병호 의원 발의)

12월 1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 발의)

(2014. 12. 1 김재원·강기윤·이이재·김도읍·김현숙·윤영석·염동열·박인숙·김정록·이완구·주호영·이장우 의원 발의)

12월 2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아동시설 운영 국고환원 촉구 결의안

(2014. 12. 1 보건복지위원회장 제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김성주·황주홍·이춘석·변재일·정진후·윤관석·양승조·최동익·박남춘·이학영·박홍근·남인순·김관영·강기정·은수미 의원 발의)

기후변화건강관리기본법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민현주·이만우·정희수·유승민·양승조·이한성·김정록·이종훈·류지영·한선교·홍일표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이찬열·안민석·양승조·변재일·신경민·김태년·강동원·황주홍·이개호·조정식 의원 발의)

이상 4건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김우남·주승용·강기정·서영교·양승조·유성엽·김춘진·정우택·부좌현·김영록·최규성·박민수·김성곤 의원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최봉홍·양창영·이만우·민현주·김성태·정희수·박창식·박대동·이상일·이종훈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최봉홍·이만우·민현주·김성태·주영순·정희수·박창식·윤명희·이상일·이종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김우남·주승용·강기정·서영교·양승조·유성엽·김춘진·부좌현·김영록·최규성·박민수·김성곤 의원 발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김성태·이종훈·정두언·박민식·유승우·최봉홍·이완영·강석호·박성호·이노근 의원 발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박기춘·이윤석·김민기·최규성·정세균·정성호·박지원·김관영·변재일·김광진 의원 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 발의)

(2014. 12. 1 이미경·김용익·임내현·이학영·박민수·김성곤·안민석·한명숙·장하나·김경협·유승희·김관영·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3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하겠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김한표·권성동·안홍준·홍지만·김태원·김정록·류지영·이한성·윤명희·염동열 의원 발의)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강동원·유성엽·장하나·부좌현·이윤석·김민기·김우남·김제남·이찬열·조정식·유승희 의원 발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2014. 12. 1 민현주·김정록·이만우·최봉홍·심상정·권성동·박윤옥·양승조·유승민·류지영·홍일표 의원 발의)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위문금 각출의 건

(2014. 12. 2 의장 제의)

휴회의 건

(2014. 12. 2 의장 제의)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4일간)

○의안 심사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2014. 9. 16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14. 10. 1 정부 제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이상 2건 2014. 11. 3 정부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14. 10. 6 심재권 · 유기홍 · 이미경 · 박혜자 · 부좌현 · 박남춘 · 민병두 · 최민희 · 이상직 · 강동원 · 문희상 · 이찬열 · 김경협 · 배재정 · 김춘진 · 임내현 · 이석현 의원 발의)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외교통일위원장 보고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014. 10. 6 정부 제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2014. 10. 7 정부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2015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2014. 10. 10 정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보고

○의안 철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 의원 대표 발의)

(2012. 9. 19 노철래 · 김을동 · 주영순 · 이우현 · 정갑윤 · 이현재 · 권성동 · 염동열 · 이체익 · 민병주 · 손인춘 · 홍지만 · 이한성 · 박인숙 의원 발의)

2014년 11월 1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전자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4. 3. 21 이종걸 · 황주홍 · 이학영 · 배기운 · 민병두 · 박민식 · 이상직 · 김기준 · 김영주 · 김영록 의원 발의)

11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청원 제출

로클릭 및 검사임용에 있어서의 공개경쟁 요청에 관한 청원

(2014. 11.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사법연수원 (장항동) 한석현으로부터 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법원조직법 부칙2조(판사임용을 위한 경과조치)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2014. 11. 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50 사법연수원 (장항동) 한석현 외 323인으로부터 이명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11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2·8독립선언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관한 청원

(2014. 11. 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9 서울 YMCA(종로2가) 안창원 외 4,511인으로부터 황인자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

세계한민족축전 지속 개최 지원에 관한 청원

(2014. 11. 18 서울 송파구 방이동 88번지 올림픽 공원 (사)국민생활체육회 서상기 외 252인으로부터 박주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1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기성회 회계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의 조속통과에 관한 청원

(2014. 11. 27 광주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장민규 외 723인으로부터 박주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월 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2014. 12. 1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이태호 외 4인으로부터 이상민 · 김광진 · 도종환 · 서기호 · 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

군인인권보호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청원

(2014. 12. 1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이태호 외 4인으로부터 김광진 · 도종환 · 서기호 · 이상민 · 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

군사법원 폐지 등 군사법개혁에 관한 청원

(2014. 12. 1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이태호 외 4인으로부터 이상민 · 김광진 · 도종환 · 서기호 · 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3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추천의뢰서 제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14. 11. 13 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서면질문서 제출

손해보험사 연금저축 제한규제에 관한 질문서
자동차 사이드미러 규제개혁 촉구에 관한 질문서
(이상 2건 2014. 11. 10 심재철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대학등록금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4. 11. 18 정부 제출)
자동차 사이드미러 규제개혁 촉구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손해보험사 연금저축 제한규제에 관한 질문서
에 대한 답변서
(이상 2건 2014. 11. 19 정부 제출)
(이상 3건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파견 우리 부대 활동 보고서
(2014. 11. 24 정부 제출)
11월 2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
제7차 국제반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회위원회 심의결과
(2014. 11. 26 정부 제출)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송부